

3. 영 국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편 근로 관련 보건, 안전, 복지 및 위험 물질 내지 특정 대기 배출 규제

제1장 총칙

제1조 ① 본 편 각 조항은 본 총칙 상 다음의 목적에 따른다.

1. 근로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보장;
2. 근로자의 작업상 또는 작업으로 인한 보건 및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3. 폭발성 또는 고인화성 기타 위험물질 규제 및 해당 물질의 불법적 취득, 소지 및 사용 방지;
4. 본 조에 따라 규정된 모든 해당 용지로부터 대기 배출되는 유해 또는 침해적 물질 규제.

② 본 편 보건안전규정 및 농업보건안전규정과 직무지침 기안 및 승인 관련 조항들은 특히 본 법 부칙 제1조 제3문상 특정된 법률과 동 법률에 따라 규정된 규정 및 령을 차후 본 장 타 규정과 결합하여 이행될 당해 법률상 보건안전 및 복지기준 시행 내지 개선을 목적으로 규정 및 공인 직무규칙의 체계로 대체하도록 함에 있어서 효력이 있다

③ 본 편 목적상 근로자의 작업상 또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사용 또는 일부 사용되는 사업, 설비 내지 물질의 사용방식에 따른 위험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본 편에서 그 일반적 목적이라 함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제2장 일반적 의무

제2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 ① 각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모든 피고용자의 보건, 안전, 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상 사용자 의무의 일반성과 관계없이, 다음의 특정 사항은 그 의무에 포함된다.

1.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안전 및 보건상 위험배제를 위한 설비 및 작업체계 설

치 및 유지;

2.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개체 및 물질의 활용, 처리, 보관, 이송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 위험방지 보장을 위한 조정관리;
3.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작업 중 피고용자의 보건안전 보장에 필요한 정보, 지침, 훈련 및 감독의 제공;
4.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사용자가 통제하는 모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상 위험 배제를 위한 유지와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없는 작업장 출입 수단의 제공과 유지;
5.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피고용자의 작업상 복지 증진 및 조정관리와 관련한 안전하고 위험이 배제되고 충분한 근로환경의 제공과 유지.

③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사용자는 피고용자의 작업상 안전보건 관련 일반적 정책을 서면작성하고 적절히 개정해야 하며, 당해 서면 및 개정사항을 모든 피고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은 공인된 (법령상) 노조 대상 사안에서 피고용자중 안전담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당해 대표는 본 조 제6항에 따른 사용자 협의에 있어서 피고용자를 대표하고, 여타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⑤ 시행령은 피고용자 대상 사안에서 피고용자중 안전담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당해 대표는 본조 제6항에 따른 사용자 협의에 있어서 피고용자를 대표하고, 여타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⑥ 모든 사용자는 피고용자의 작업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수단의 증진과 개발, 그리고 당해 수단의 효과성 검증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관리를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안전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모든 사용자는 그 의무로 규정된 경우, 본조 제4항 내지 제5항상 안전대표가 요청할 때 시행령에 따라 피고용자의 작업상 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수단의 감독 기능 및 여타 규정된 기능을 담당할 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3조(사용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 ① 모든 사용자는 그 피고용자 이외의 자의 안전보건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자영업자는 자신 및 그 피고용자 이외의 자의 안전보건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용자와 자영업자는 그 의무로 규정된 경우 규정상 상황과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수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피고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안전보건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용지 관련자의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 ① 본 조는 다음의 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며,

1. 근로자 이외의 자

2. 작업장 또는 설비 내지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장소로서 비-국내 용지를 사용하는 자

본 조는 위의 자들과 관련된 작업장 또는 비-국내 용지에 적용된다.

② 본 조상의 용지 또는 그 용지의 출입 또는 해당 용지상 설비 내지 물질을 통제하는 자는 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상당한 한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해당 용지와 모든 출입수단이 해당 용지 및 설비 내지 물질을 사용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에 있어서 안전과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 내지 임차상 다음과 관련하여 의무가 있는 자는

1. 본 조상의 용지 관리 내지 보수 또는 출입

2. 해당 용지의 설비 내지 물질과 관련한 안전 또는 위험배제

본 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사항을 관리할 의무 있는 자로 본다.

④ 본 조상 용지 내지 사항을 관리하는 자는 무역, 거래 내지 여타 사업 (영리 또는 비영리)과 관련하여 용지 내지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대기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관한 특정 용지 관리자의 일반적 의무) ① 제1조 제1항 제4호상 용지 관리자는 해당 용지 유독유해 물질이 대기 속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방출 물질을 무해화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이 규정한 수단에는 설비의 무해화 목적 사용 방식과 동 제1항상 물질방출과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한 감독이 포함된다.

③ 모든 유독유해물질 내지 본조 제1항상 유독유해물질은 본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독하거나 관련 사안인 경우 유해한 물질로 본다.

④ 본 조상 모든 용지 관리자는 무역, 거래, 여타 사업 (영리 또는 비영리의)과 관련하여 용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본 조상 관리자에 부여된 의무는 그 관리

범위상 사항에 한한다.

제6조(작업에 사용하는 물품 및 물질에 관한 제조자등의 일반적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의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모든 자의 의무다.

1.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해당 물품이 적절히 사용될 경우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함;
2. 제1호에 따른 의무 실행을 위해 조사 검토를 수행하거나 계획하여야 함;
3. 작업상 물품 사용과 관련하여 설계 및 검사내역 및 사용상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② 작업상 사용되는 모든 물품의 설계 및 제조자는 물품이나 고안상 보건 및 안전상 위험을 발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이를 제거 또는 극소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기획하여야 한다.

③ 작업중 근로자가 사용할 물품이 위치한 모든 용지에서 사용될 모든 물품을 설치하는 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적절한 사용할 경우라면 안전하지 못하거나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작업중 사용하는 모든 물질을 제조, 수입 및 공급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1. 물질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적절히 사용할 경우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제1호에 따른 의무 실행을 위해 조사 검토를 수행하거나 계획하여야 함;
3. 작업중인 물질의 사용과 연관하여 관련된 모든 검사에 관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내지 물질과 연관하여 적절히 사용할 때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에 관한 것이 유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⑤ 작업중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제조하는 사람은 물질이 보건 및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경우 이를 발견하거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제거 또는 극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⑥ 제1항내지 제5항은 이 조항을 목적으로 해당자가 조사, 검토, 연구하여 합리적으로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이를 재시행하게 할 의무는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는 무역, 사업,

(영리 또는 비영리의)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과 그가 관리하는 문제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⑧ 물품을 고안, 제조, 수입 및 공급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지시에 의해 쓰여진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이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에서 보장하는 정해진 조치를 취해 그 물품이 적합하게 다루어질 때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을 경우에 그 사업은 사업의 조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도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의무를 처음에 언급한 사람에게서 경감시키는 효력이 있다.

⑨ 할부구매협정, 조건부 판매협정 및 신용구매협정하에서 (“표면상 공급자”인) 사람이 작업상 사용 목적으로 물품이나 물질을 또 다른 사람(즉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그러한 협정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품을 인수하는 데 돈을 대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 공급자인 제 3자로부터 고객이 돈으로 인수하는 수단으로서 고객에게 공급되는 물품이나 물질에 출자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표면상의 공급자가 아닌 실질적 공급자는 고객에게 물품이나 물질을 공급함으로서 이 장의 목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어떤 의무도 표면상 공급자가 아닌 실질적 공급자에게 해당된다.

⑩ 이 조의 목적상 물품이나 물질을 적절히 사용할 때 그것을 고안, 제조, 수입 및 공급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상 관련된 정보나 조언과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작업중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다음 각호의 사항은 모든 근로자의 의무이다.

1.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나 작업상 실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배려.
2. 관련법령조항에 있거나 이에 의거하여 사용자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 내지 필요조건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제9조(특정용도 제공된 사물을 훼손 또는 오용하지 아니할 의무) 사용자는 관련된 법령 조항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준거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돈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위원회와 사무국의 설치) ①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사무국, 두 기관의 설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의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이외의 위원을 임명하기 앞서서 국무장관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고 다른 임원들은 전문기구를 포함한 기타 기관이나 지방 기구를 대표하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상의할 수 있으며, 임원의 활동은 적합한 기준에서 이 장의 일반적 목적과 관련된 문제에 관여한다.

1. 임원중 3명은 적합한 자격의 사용자 대표 기관과 상의.

2. 임원중 다른 3명은 지방 당국 및 그와 비슷한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과 상의하여 임명.

④ 국무장관은 위원중 1인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⑤ 안전보건 사무국(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위원단의 이사인 국무장관이 승인한 위원회가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사무국이 이사와의 상의하에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⑥ 부칙 2의 규정은 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해 유효하다.

⑦ 위원회, 사무국 및 다른 임원 및 직원들의 기능은 공무로 수행된다.

제11조(위원회 및 사무국의 일반적 기능) 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외에도 위원회는 농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제외하면 이 장의 일반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약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의무이다.

② 다음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위원회의 의무이다.

1. 이 장의 일반적 목적 및 그 이상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와 상관있는 사람들을 돋는것.

2. 연구, 연구결과의 출판, 앞서의 목적들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공급을 수행하고 연구 및 기타 사항과 연관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을 장려하도록 협약하는 것.

3. 각 정부 부처, 각 사용자, 각 근로자,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기관, 앞

서 목적과 관련된 문제와 상관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및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며 그러한 문제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하도록 협약하는 것.

4. 위원회가 권한을 갖는 법률 입안이 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모든 관련 법률조항하에서 법규화 하는 것은 그러한 제안에 권한을 갖는 권리 기관에 이따금 따르는 것.

③ 다음 각호는 위원회의 의무이다.

1.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상세하게 제안 수행할 경우 국무장관에 따르는 것.
2. 아래 항목에 종속하여 국무장관이 승인하는 제안에 따른 활동을 보장하는 것.
3. 국무장관의 지시를 실효화하는 것.

④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게 수여된 기타 기능과 별도로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국무장관이 위원회의 명령을 유효화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위원회는 특정사건의 관련법률조항의 시행을 사무국이 명령하지 못하도록 한다.

1. 위원회의 시행명령과 같은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것.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회의 명령은 유효.

⑤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무국의 의무가 있다.

1. 국무장관이 관여하는 문제와 연관된 사무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공.
2. 이 장의 일반적 목적과 상관없이 사무국의 임원이나 직원으로부터 전문적인 관련조언을 얻고자 할 때 이를 제공.

⑥ 위원회 및 사무국은 이 장에 준거하는 모든 명령에 종속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제외한 위원회 및 사무국(이 항에 의해서 부여된 기능을 포함하여)의 임무 수행을 촉진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 또는 도움이 되거나 부수적인 일에 권한을 부여한다.

제12조(국무장관의 위원회 통제)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제1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어떤 제안도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승인.
2. 이 항목에 의해서 이전 명령을 박탈하는 것이외의 임무 수여 명령이 아닌 임무

변경명령을 언제든지 위원회가 관장하게하며 국가안전이익상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명령 또한 관장하도록 함.

제13조(위원회의 다른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정부 부처나 정부 부처의 사람이 (유료 및 무료로) 위원회나 사무국을 대신하여 위원회나 사무국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협약을 체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 부, 국(장관의 경우 재정 승인을 받을 임무를 포함하여)이 행사하는 국무장관의 의견상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위원회의 임무와 연관된 위원회가 수행하는 임무 즉 장관, 부처, 관청의 임무를 대신하여 (유료 내지 무료로) 임무를 수행시 위원회는 국무장관, 정부 부처, 공공 관청과 협약을 체결.
3. 이 장의 목적상 정부 부처, 관청이 행사하는 임무와 연관하여 정부 부처나 다른 공공 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 (유료 및 무료로)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
4. 임무와 관련된 조언을 위원회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다음 항목의 일반적 권리침해의 소지 없이) 수상의 승인하에 국무총리가 임명자의 보수를 결정.
5. 위원회의 임무와 연관하여 여행 및 생활 경비를 지급하고 시간당 보수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이는 수상의 승인하에 국무장관이 결정.
6.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 정보의 유포에 관해서도 재정 지원.
7. 위원회 및 위원회를 대신하여 시설 및 서비스의 규정을 위해 위원회가 제정한 협약에서 그 협약에 대한 제 3자와 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위원회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지불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원단이 법제화할 권리이나 법적 성격의 다른 수단을 구성하는 장관, 부처 및 관청의 임무 수행하는 것을 인가하지 않는다.

제14조(위원회의 직접 조사 및 질문권) ①이 장은 위원회가 이 장의 일반 목적이나 그 목적을 법규화하고 이 임무의 목적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쓸모 있다고 사려되는 사고, 사건, 상황 및 문제는 무엇이나 다 적용되나, 위원회가 심의 중인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법률조항의 제정을 보장할 책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위원회는 농사 활동과 상관없는 문제만을 관여하지 않는다.

1. 사무국을 지도 감독하고 이 장이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조사 작성하는 사람을 인가.

2.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문제에 연루된 조사를 지도.

③ 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사는 국무장관이 이 항의 목적을 위한 법규와 일치하도록 하며 다른 방법으로 법규가 제공하는 장소나 정도를 제외하면 공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해 법규가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1. 조사하는 사람 및 조사하는 사람을 돋는 사람에게 출입 및 검사의 권한을 수여.

2. 그 사람에게 증인을 호출하여 증거를 대거나 문서작성케하는 권한 및 증인 선서를 하며 선서를 시키거나 성명을 시키는 권한을 수여.

3. 국무총리가 결정하는 한도에서 조사, 특별보고 내지 조사에 관한 경비를 지불.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보고서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지연시킨 사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나 방식으로 보고서를 공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 보고서나 조사(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의 임원이나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것)를 공보부 장관의 승인과 함께 국무장관에게 보수나 비용을 지불 함으로써 결정.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 경우엔 그것을 지연시킨 사람과 보수나 비용을 돋는 사람을 지명하는 손해사정인과 국무장관에게 이러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공보부 장관의 승인하므로써 결정.

3. 이러한 조사나 특별 보고나 요구인 경우에 국무장관의 범위에서 기타비용을 결정하고 지불할 수 있다.

⑦ 본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스코틀랜드 내 본 조 사안에 관한 조사를 명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한 사안에 있어서 당해 사망결과에 대한 조사는 1895년 치사사고조사(스코틀랜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스코틀랜드 법무총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안전보건시행령 및 공인직무규칙

제15조(안전보건시행령) ① 제50조에 따라 국무장관은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본

조상의 법령(본 편 “보건 및 안전 법령”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다만 전적으로 농업 작업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항들의 일반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안전 법령은 본 편의 일반적 목적에 따라 부칙 제3조상 목적에 따른 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안전보건시행령은

1. 현존하는 법률조항은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음.
2. 특정경우와 관련하여 제2조내지 제9조의 규정 또는 현존하는 법률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3. 관련법률조항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 공무원이나 정부가 책임을 짐.

④ 안전보건시행령은 위원회 또는 다른 구체적인 기관이나 사람의 승인을 참조하여 요구 조건을 부과하고 이따금 개정되거나 재 발행되는 문서를 참조하듯이 법규의 참조는 구체적인 문서로 한다.

⑤ 안전보건시행령 관련법률조항에 부과된 요구조건이나 금지사항의 면제를 무조건적 또는 조건적으로, 한시적 또는 무한시적으로 제공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당국을 대신하여 인가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 또는 조건적으로, 한시적 또는 무한시적으로) 관련법률조항하에 부과된 요구 조건이나 금지 사항을 면제받게 한다.

⑥ 안전보건시행령 법률 조항이 부과하는 요구 조건이나 금지 사항은 위반한 사람들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유죄이고,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상황이건 관련법률조항의 위반에 대한 소송은 특정변호인을 두게하며, 현존 법률조항 두 번째와 아홉번 째 또는 안전보건법규하에서 부과되는 요구조건이나 금지사항의 위반죄는 기소가 되지않고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처벌을 제한한다.

⑦ 제35조의 규정에 침해를 주지않고 안전보건시행령은 위반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법정의 집행권 및 사법권의 책임하에 그 위반죄를 둘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취급되도록 관련법률조항하에서 위반죄에 관한 법률조항을 둔다.

⑧ 안전보건시행령은 (예를 들어 특정건물에만 적용하는 규정같은) 특정상황 또는 특정경우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의 형식을 갖는다.

⑨ 제84조제3항에 따른 추밀원령이 제정되고, 본 조가 대영제국 외에서 사람, 용지 또는 근로에 대하여 또는 관련하여 적용될 경우, 동 추밀원령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시행령은 대영제국 외 항행중 항공기, 선박, 호버크래프트 또는 연안시설,

또는 대영제국 외 해저케이블 또는 해저파이프라인관련 작업중 근로자에 대하여 또는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시행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본 조 상 “특정”은 안전보건시행령상 특정된 경우를 뜻한다.

제16조(위원회 공인 직무규칙) ① 제2조 및 제7조상 요건 또는 안전보건시행령 또는 현행 실정법 조항과 관련한 실무지침 제시의 목적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에만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준비 유무와 상관없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의견 하에 시행령을 승인 공포.
2. 위원회 이외에도 그 목적상 부합 하다고 여겨지는 시행령을 공포 또는 제안 공포하는 것을 승인.

②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을 승인할 수 없다.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기 전에 먼저 상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특히 전자기 방사선과 관련된 실행령의 경우 국립방사선보호회 같은) 정부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이 적합하다고 여긴다.
2. 국무총리의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실행령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나 기타 기관에 이 장 하에서 상의한다.

③ 위원회가 시행령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공표한다.

1. 심의 중인 법령을 규명하고 위원회가 승인 유효화하는 날짜는 언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전이 승인하는 조항을 구체화.

④ 위원회는 이조에 준거하여 시행령 전체 또는 일부를 이따금 개정하고 이 조항에서 승인된 동안 시행령 전체 또는 일부의 개정 및 제안 개정을 승인한다.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정할 필요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의 승인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⑤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이 장하에서 승인된 시행령의 승인을 철회 가능하며 법령 승인 제안을 할 경우 정부 부처 및 기타 기관에 상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 조에서 승인한 시행령의 승인을 철회할 경우 위원회는 심의 중인 법령을 규명하고 승인이 무효화되는 날짜를 언명한다.

⑦ 이 장의 승인된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이 장하에서 승인된 개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의거하여 유효한 동안 그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⑧ 시행령 발행 또는 발행 제안을 승인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다른 식의 권한은 그러한 시행령의 장을 승인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장의 “시행령”은 그러한 시행령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17조(형사소송상 공인 직무규칙의 사용) ① 공인 직무지침상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자는 그 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규정상 또는 규정에 따른 조건 또는 금지에 반하여 범행한 혐의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규정내용이 위반당시 공인지침이라면, 당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본 조 이하의 항은 해당 직무지침에 관하여 효력이 있다.

② 법정에서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 사항이나 금지 사항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은 소송에서 증거 제시가 용인된다.

물리적인 시점에서 시행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검찰 측이 요구 사항이나 금지 사항의 위반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제와 법정에서 관련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문제는 실행령 준수 이외의 요구 사항이나 금지 사항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응낙될 것을 법정이 만족하지 않는 한 증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③ 형사소송 위원회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공고 취지의 문서는 반대 증명이 없는 한 공고로 간주되며 법정에서 공고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행령은 반대 증명이 없는 한 공고에 종속된다.

제 5 장 시행

제18조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 당국) ① 위원회는 일부 다른 행정기관이 관련 법률 조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책임이 없는 한 관련법률조항 시행의 적절한 협약에 관한 의무가 있다.

②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지방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함.
2.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에 관한 책임 조항은 규정 내에서 정함. 이 규정을 준거 한 법규는 그 법규 하에서 영향을 받는 책임의 전가나 임무는 그 해당 당사자에게 공고하는 조항을 포함.

가.사무국을 지방행정 기관으로 또는 지방 행정기관을 사무국으로 전환.

나.이 항에 의거하여 법률 조항 시행의 관련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을 배제할 목적

으로 사무국나 행정기관에게 양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5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 법규 또는 농업 보건 및 안전 법규에 따른다.

④ 다음은 각 지방행정 기관의 임무이다.

1. 시행 책임이 있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 조항 내에서 시행에 관한 적절한 협약을 함.

2. 위원회의 안내 지침에 따라 선행 항목 및 관련 법률 조항의 기타 기능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함.

⑤ 해당농업청 장관, 사무국 또는 지방관청이외의 기관이 관련 법률규정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항의 시행 책임을 진다.

1. 어느 정도 그 시행의 협약을 함.

2. 선행하는 항목 및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게 준 안내 지침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기관의 기타 기능에 의해 기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

⑥ 이 조항이나 법규의 조항은 유죄임을 인정하는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을 스코틀랜드 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⑦ 이 장에서 “시행 기관”은 관련 법률 조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정 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무국나 기타 기관을 의미하고, 또한 시행 기관의 책임 분야는 당분간 규정 시행의 책임을 갖는 기관에 참조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위원회나 사무국의 임무 수행은 정부 부처나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 장의 조항에서 그 항목 하에서의 위원회나 사무국(또는 집행하는 시행 기관)의 참조는 기능과 관련된 행정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한다.

따라서 시행 기관의 책임 분야에 관한 참조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당 부처나 담당자에게 한다.

제19조 (검사관의 임명) ① 시행 기관은 책임 분야 내에서 관련 법률 조항의 실행을 유효화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지위와 상관없이 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한다. 임명의 종료 또한 이 조항에서 정한다.

② 이 조의 검사관의 각 임명은 관련 법률 조항에 의해 검사관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며 행사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검사관은 이 조항에서 임명된다.

1. 구체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음.

2. 검사관을 임명한 해당 기관의 책임 분야 내에서만 구체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음.

③ 검사관의 임명 증서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의 정도는 임명한 해당 시행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④ 관련 법률 조항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검사관은 임명 증서나 정식 증명 사본이 있어야 한다.

제20조 (검사관의 권한)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은 그를 임명한 집행 기관의 책임 한도내에서 관련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들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 앞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합리적 시간에(또는 그의 의견상 위험 한때는 언제든지) 들어가야 함.

2. 임무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염려되는 합리적 명분이 있을 때 경관을 동반할 권리가 있음.

3.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 및 장비를 동반하고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음.

가. 검사관의 집행기관이 정식으로 인정한 인물

나. 건물에 들어갈 목적으로 필요한 장비 또는 물질

4. 항목의 검사 및 조사 목적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한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함.

5. 건물에 들어갈 때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의 목적상 필요시에 측정, 사진, 녹음을 함.

7.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건물, 그 주변 환경, 주변 건물에서 발견된 물품 또는 물질의 견본을 가져올 수 있음.

8.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건물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이 안전보건상 위험성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떼어 내거나 시험에 맡김.

9.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다음 목적의 필요가 있는 한 그것을 압류.

가. 검사하고 할 수 있는 권리내에서 모든 것을 함.

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함.

다. 관련 법률이나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10. (검사관이 임명 출석한 사람 및 출석을 허용한 사람 이외의 사람은 없는 가운데) 검사관이 생각하기에 알맞은 질문에 대답하고 그 대답의 진실을 서명 날인하기 위하여 검사관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합리적 명분으로 출석 요청할 수 있음.

11. 다음에 관하여 검사용 제출 및 복사본, 출입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책이나 문서

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목하의 검사 및 조사의 목적상 검사관이 볼 필요가 있는 기타 책이나 문서

12. 이 장에서 검사관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에 필요한 책임에 관해 검사관의 지휘 하에 문제에 관한 시설 및 도움을 줄 사람을 필요로 함.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필요한 다른 권한

③ 국무총리는 규칙에 따라 (견본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 취득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다.

④ 검사관이 건물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건물과 관련한 책임이 있고 현장에 출두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 검사관이 담당자의 출석할 권한에 의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⑤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제2항제8호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검사관은 위험을 확인할 목적으로 적합한 사람에게 상의할 수 있다. 그 권한하에서 제안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하에서 검사관은 건물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을 취득한다.

그곳을 떠날 때 책임자와 함께 떠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눈에 띠는 곳에 물품이나 물질의 규명을 위해 충분한 양을 검사관의 권한하에 가져간다는 자세한 메모를 남긴다.

검사관의 권한하에 물질을 가져가기 전에 가능하면 그것의 견본을 가져가거나 규명할 그 견본의 일부를 건물 책임자에게 준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구 조건에 의거하여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송에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남편이나 부인에 대해 반대 증거할 수 있다.

⑧ 본 조는 고등법원 또는 스코틀랜드 고등법원 소송에서 증거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할 법률 전문가 특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강제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개선조치의 고지) 검사관이

- ① 유관 실정법 규정의 하나 이상을 위반한 자;
- ② 위반이 지속 또는 반복될 가능성있는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실정법 규정을 위반한 자로 판단한 경우, 검사관은 다음과 같이 고지(본 편에서는 “개선고지”라 한다)한다. 검사관의 의견사항이며, 근거 법조항 내지 조항들을 특정하고, 의견의 근거를 특정하여 제시하며, 위반 사실의 개선을 요구하고,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제24조상 해당 고지에 대한 항고기간종료 이전까지로 해야 한다)을 고지에 특정해야 한다.

제22조 (금지조치의 고지) ① 이 조항은 관련법률이 적용하거나 활동이 수행될 경우 적용하게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통제하에 수행되는 또는 수행될 예정인 활동에 적용한다.

② 이 조항이 적용하는 활동에 관하여 검사관이 심의중인 사람의 통제하에 수행하거나 수행하게될 활동이 심각한 신체부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검사관은 (본 편에서는 “금지고지”라 한다.)통보를 해당자에게 할 수 있다.

③ 금지고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관이 진술한 의견에 관해 언명.
2. 검사관의 의견상 전술한 위험이 일어날 경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기.
3. 검사관의 의견상 그 문제가 관련법률조항의 위반에 관여될 경우 그의 의견을 언명하고 그의 의견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왜 그가 그런 의견을 갖는지 그 상세한 이유를 밝힘.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화된 문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화된 조항이 관련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공고한 사람의 통제하에 통보가 수행되지 않는 활동을 지시.

④ 검사관이 그의 의견상 심각한 개인 부상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그것을 언명하고 다른 경우 통보에 구체화된 기간 말에 효력 발생한다.

제23조 (21 및 22조의 보충 조항) ① 이 조항에서 “공고”는 개선 공고 또는 금지 공고를 뜻한다.

② 공고는 관련하는 문제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시행령에 참조하여 어느 정도 고안될 수 있고, 위반이나 문제를 시정하는 다른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고를 수행할 사람을 두도록 한다.

③ 관련 법규가 건물이나 건물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되며 검사관이 그 빌딩이나 문제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과 관련하여 개선 공고를 할 경우 문제의 법규가 전술한 바와 일치하는 건물이나 문제에 관한 건물 법규의 요구 사항 보다 더 부담이 따르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는 한 관련 건물이 새로 세워진 경우 건물이나 문제가 시행 기간동안 건축 법규의 요구 사항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부담이 따르는 법규의 위반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제재 수단을 공고로 지시하지 않는다.

건물의 경우 이 항에서 “관련 건물”은 건물과 연관된 문제의 경우 문제가 연관된 건물을 뜻한다.

④ 검사관이 작업장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건물과 관련하여 화재 발생시 수단을 취하게하는 공고를 하기전에 먼저 소방 기관과 상의한다.

이 항의 “소방 기관”은 1971 화재 유의 조항의 제43조제1항의 뜻이다.

⑤ 개선 공고나 금지 공고가 즉시 효력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그 공고는 제21조 및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기간 말 전에 언제든지 검사관이 철회할 수 있고, 공고에 관한 항소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검사관이 특정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조항의 스코틀랜드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요구 사항과 함께” 부터 “전술한 바”의 단어는 제3항에 나오는 단어는 대체될 단어이다.”(A)관련 건물이 신축될 경우 준수해야 할 건물이나 문제에 관련된 건물 기준 규칙의 조항에 또는

2. 1959 스코틀랜드 건축 법령의 16 조항에서 보안관에게 공소할 경우

가. 건물이나 문제가 건물 규제에 따르게 하는데 필요한 집행 활동을 요구하는 법령의 10조 하에서의 명령에 반대하여

나. 건물이나 문제로 하여금 그러한 법규를 따르도록 하는 법령의 11조 하에서의 명령에 반대하여 관련 법규가 전술한 건축 법규 조항 보다 또는 보안관에 따라 다양한 명령의 요구 사항 보다 더 부담을 주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는 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법규의 조항에 관해 다양한 명령을 갖는다.

3. 제5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기준 법규’는 1959 (스코틀랜드) 건물 법령

의 제3조의 의미와 같다.

제24조 (개선 또는 금지 고지에 대한 항고) ① 이 조에서 “공고”의 뜻은 개선 공고 또는 금지 공고이다.

② 공고를 받은 사람은 지시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산업 법정에 공소할 수 있으며, 그 공소에서 법정은 그 공고를 취소하거나 확정할 수 있다. 공고가 확정되면 본래 내용대로 또는 법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수정하여 확정 한다.

③ 이 조에서 공고에 대한 공소는 전술한 항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한다.

1. 개선 공고의 경우 공소를 하면 법정이 공소인의 신청을 지시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만약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취소할때 까지 효력이 있음.)

2. 금지 공고인 경우에도 공소는 똑같이 효력을 미치며, 법정 상소인의 신청인 경우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지시 사항인 경우에만)

④ 이 조의 산업 재판이 있기 전에 한 명이상 평가인을 재판의 목적상 둔다.

제25조 (급박한 위험 원인을 처리하는 권한) ① 검사관이 건물에 들어가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그가 발견한 상황에서 그 물품이나 물질이 심각한 개인 부상의 절박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명분이 있을 때 검사관은 그것을 압류하여 위험을 파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없앤다.

② 이 조에서 위험을 없애기 전에 다음 각호의 것에 대하여 검사관은 실행 가능성이 있다면 그가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이 있는 건물의 책임자에게서 견본을 취득하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한 견본의 일부는 그에게 준다.

1. 비슷한 물품의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물품

2. 물질

③ 물품이나 물질을 압류하여 무해하게 하자마자 검사관은 그 물품이나 물질을 취득하게 된 상황 및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적은 보고서에 서명하여 준비한다.

1. 물품이나 물질이 발견된 건물의 책임자에게 서명한 보고서 사본을 한 장 줌.

2. 그 사람이 물품이나 물질의 주인이 아닐 경우 건물주의 이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전술한 항목에게 사본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줌으로서 송달될 수 있

음.

제26조 (시행당국의 검사관 면책 권한) 관련 법률 조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관계하여 검사관에게 반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검사관은 그를 임명한 집행기관에게 그 자신에 대한 면책 보증을 요구할 법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제소된 법령이 검사관의 권한내에 있으며 그로 하여금 그의 임무로 수행하도록 자격이 주어졌다고 진실로 검사관이 믿고 이를 집행기관이 만족스럽게 여길 때 집행기관은 검사관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전체 금액 또는 그 일부를 검사관을 대신하여 책임 보상한다.

제 6 장 정보 수집 및 공시

제27조 (위원회, 사무국 및 시행당국의 정보 수집 등) ① 위원회 및 집행기관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는 국무장관총리의 동의를 얻어 문제의 기관이나 위원회에게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일정형식으로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고를 보낼 수 있다.

1. 위원회가 그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정보
2. 집행기관이 그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정보

이 항에서 “동의”는 진술한 설명의 경우에 확대되는 일반적 동의를 포함한다.

② 1947년 무역통계법 제9조(법령하에서 획득된 정보의 유출을 억제하는) 어떤 것도 방해받거나 처벌되지 않는다.

1. 행정장관이 법령의 의미 내에서의 사업에 관하여 법령하에서 획득한 정보를 위원회나 사무국에게 밝힌 정보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사업활동의 성격,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종류의 근로자들의 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장소 또는 주소, 거기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 거기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일에 참여한 다양한 근로자들의 수 등으로 구성.
2. 인력사업위원회, 직업안내소, 직업훈련소가 위원회나 사무국에게 공고에 기재된 구체적 정보를 이 항목 하에서 국무총리에 의해 정보유출기관 및 정보 수혜인에게 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장관, 위원회, 사무국 및 인력사업위원회나 다른 기관의 참조는 그 기관의 각 임원에게 하며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임원에게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나 사무국의 기능을 대표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임원 ; 그리고
3.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고문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사용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그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8조 (정보공시의 제한) ① 이 조와 다음 각호에서 “관련정보”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관련법률이 부과하는 요구사항에 준거하여 제공된 정보를 뜻하고, 관련정보의 “수취인”은 정보를 획득한 사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뜻한다.

② 어떤 관련정보도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동의없이 유포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위원회, 사무국, 정부부처 또는 기타 시행기관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
2.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수취인이 관련법규하에서 수취인에게 부여된 임무상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정보의 수취인이 정보를 다음 사람에게 유출하는 것
 - 가. 당국이 그 정보 수취를 인가한 지방기관의 임원
 - 나. 정보수취를 인가 받은 수자원 당국 또는 수력개발의 임원
 - 다. 정보수취를 인가받은 수질정화 임원
 - 라. 고급 공무원 또는 경찰의 정보수취를 인가한 경관
4. 특정인과 관련하여 밝히기를 꺼리는 형태의 정보를 수취인이 유출하는 것
5. 법률소송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질문을 목적으로 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특별보고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유출

④ 제3항에서 위원회, 사무국, 정부부처 또는 시행기관의 참조는 (시행기관이 임명한 검사관의 경우를 포함하여) 각 기관이나 기구의 임원에게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나 사무국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
2.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임원
3.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고문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1. 위원회, 사무국, 문제의 정부부처의 목적 또는 관련법규와 관련된 문제의 시행 당국의 목적이

그 항의 (A)에 해당하는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민생보건, 민생안전 및 환경보호차원의 법률제정상의 목적으로 지방당국, 수질당국, 수질정화기구, 수력개발기구의 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관련법규 또는 민생보건, 민생안전 및 환경보호차원의 법률제정과 관련한 경찰의 목적상 경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⑥ 1975년 5월 16일 이전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의 수질당국의 참조는 지역수질기구에게 한다.

⑦ 제1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특히 권한을 갖고 건물에 들어가서 획득한 무역비밀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가 부여하는 권한행사의 결과로 정보를 획득한 자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1. 임무상 목적인 경우.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질문조사나 법정소송의 목적 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송이나 조사에 관한 특별보고서의 목적인 경우.

3. 관련동의로 이 항에서 “관련동의”라는 것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요구사항에 준거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 및 다른 경우 그 정보가 획득된 건물과 관련된 책임을 갖는 사람의 동의를 뜻함.

⑧ 제7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은 건물의 고용인들 또는 고용인 대표단들이 그들의 보건, 안전,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절히 알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고용인들이나 그 대표단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검사관은 처음에 언급한 사람들의 사용자에게 같은 정보를 준다.

1. 항에서 언급하였듯이 건물 또는 어떤 것과 관련되었거나 그 건물 안에 현재, 과거에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해 취득한 사실적 정보

2. 취득했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조치 또는 임무 수행중 건물과 관련된 정보

제 7장 농업 관련 특별규정

제29조 (농업담당 행정장관의 유관농업목적상 일반적 기능) ① 다음은 농업부장관 특유의 의무이다.

1. 관련농업목적상 적합하다고 사려되는 일이나 협약을 하는것.
2.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기관, 그런 목적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 있는 기타 인들이 그러한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협약을 만드는것.

② 농수산물 및 식품장관은 관련법규하의 소송에 관해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며 연례보고서에는 1948 농업임금법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스코틀랜드 농업 담당 국무장관은 유관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의회에 연례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농업 보건 및 안전 시행령) ① 이 조의 규정(이 장에서 “농업안전보건규정”으로 언급된)은 관련농업목적을 위해 만들어 질 수 있다.

② 농업 안전보건시행령은 영국에 적용되는 시행령으로서 농어업식품 행정장관과 국무장관 공동으로 제정하는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한해 적용되는 시행령으로서 농어업식품 행정장관이 제정하는 경우, 또는 스코틀랜드에 한해 적용되는 시행령으로서 국무장관이 제정하는 경우다.

③ 농업활동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농업활동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목적상 안전보건규칙이 제정되는 경우에 특별한 농업활동상황에 편의상 필요한 농업안전보건 규정을 만드는 당국의 의견상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안전보건규정이 부과하는 것에 덧붙여서 부과된 요구사항의 목적을 제외하고 처음 언급한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안전보건규정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그 목적을 위한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 또한 처음에 언급한 규정과 농업안전보건규정의 문제에 관련된 규정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처음에 언급한 규칙이 우위에 있다.

④ 제15조제2항내지제10항과 부칙 3의 규정은 다음 수정사항에 따라서 안전보건 규정과 관련하여 효력이 있을 때 농업안전보건법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다.

1. 관련법률조항이나 현존하는 법률조항의 참조는 농업과 관련된 규정에서 함.
2.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한 참조는 해당 농업부장관에게 함.
3. 제15조제6항, 제10항 및 부칙 3의 제23항에서 안전보건규정의 참조는 농업안전보건규정에 함.

⑤ 본 조 제1항의 일반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 보건안전 시행령은 유관법률조항상 농업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 발급, 갱신, 변경, 이관 또는 취소 권한을 가진 당국에 다음의 고지를 요구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1. 허가 발급, 갱신, 변경 및 이관 신청자에 대한 당국의 신청거부 결정사항.
2. 허가소지자에 대한 당국의 허가취소 또는 해당 허가의 기간, 조건, 제한의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

또한 해당 결정사항으로 침해받은 자를 위하여 시행령에 따른 기간내, 그리고 방식에 따라 유관당국 또는 당국이 지정한 자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

⑥ 부칙 제3조 제2절에 따른 농업 보건 및 안전시행령과 관련하여, 본 조 제2항상 “영국”은 “대영제국”으로 본다.

제31조(농업 관련 유관법률조항의 시행) 제15조, 제1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시행령의 모든 규정에 따라, 담당 농업 행정장관은 유관 농업목적에 특정된 사안에 적용될 유관 법률조항의 시행을 위한 충분한 조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본 편 농업관련조항의 적용) ① 이 조의 다음조항은 농업부장관과 관련된 이 장의 특정조항 또는 농업관련 목적에만 관련된 문제를 목적으로 효력이 있다.

②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항,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적용하듯이 해당 농업부장관과 관계하여 적용하고, 제16조의 규정은 다른 문제에서와 같이 농업관련 목적에만 한정된 문제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의 적용에서 이 사용의 조항은 승낙 및 라이센스 협약 및 적용저작권, 지적소유권보호의 약정 및 조건에 따른다. (이는 자국 및 국제조약의 적합한 법의 지시 하에.)

제 8 장 별칙

제33조 (범죄) ① 다음의 자는 범죄로 처벌한다.

1. 제2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자;
3. 안전보건시행령 또는 농업안전보건시행령 또는 동 시행령상 요구 또는 금지조건을 위반한 자; (허가, 승인, 면제 또는 동 시행령에 따른 관계 당국 제시요건상 요구 또는 제한조건에 따라 요구 또는 금지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동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5.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검사관이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위반한 자;
6. 검사관 출석명령에 따르거나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조사에 답하는 자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한 자;
7. 개선고지 또는 금지고지(항고에 따라 재고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 또는 금지조건을 위반한 자;
8. 검사관의 권한 행사 또는 임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9. 제27조 제1항상 고지에 따른 요구사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 제4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유출한 자;
11. 허위 사실을 알면서 진술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허위의 사실을 부주의하게 진술한 자;
 - 가. 관련 실정법 조항상 또는 조항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정보를 진술하기 위한 경우, 또는
 - 나. 관련 실정법 조항상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획득할 목적인 경우
12. 관련 실정법 조항상 필요한 등록부, 서적, 고지문 또는 여타 문서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입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 기망의 의도로 당해 사실을 사용 또는 제출한 자;
13. 기망할 의도로 관련 실정법 조항 또는 그 목적에 따라 발급 또는 발급권한이 부여된 문서를 위조 또는 사용하거나, 해당 문서 외관에 유사한 문서를 기망할 계획으로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
14. 검사관의 신분을 사칭한 자;
15. 제42조상 법원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본 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8호, 제14호의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제20조상 검사관이 부과한 요구조건을 위반한 자는 약식절차에 따라 4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제6항 제4호 또는 부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조 제1항상 범죄로서 본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본 조 제1항 제5호 상의 범죄로서 본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현행 실정법조항상 범죄로서 벌금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는
1. 약식절차에 따라 4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식기소절차에 따라

가. 본 항상의 범죄인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 또는 동 구금형과 벌금에 처한다.

나. 위의 가 목 이외의 범죄인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④ 제3항제2호 가목은 다음의 범죄에 적용된다.

1. 관련 실정법 조항에 반하여 사무국 또는 유관 농업행정장관이 관련 실정법 조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급한 허가내용을 따르지 아니한 죄;

2. 위의 제1호상의 허가에 부가된 요구 또는 금지조건을 위반한 죄;

3. 관련 실정법 조항에 반하여 폭발성 물건 또는 물질을 획득 또는 획득하려 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한 죄;

4. 위의 제1항 제7호상 요구조건 또는 금지고지가 부과한 금지조건을 위반한 죄;

5. 위의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죄

⑤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상의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는 유죄평결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지속될 경우(제42조 제3항에 따라) 추가 범죄를 행한 자로서 지속 중 각 1일당 5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본 조에서 “위조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1913년 위조법의 정의에 따른다.

제34조(약식절차 회부시한의 연장) ① 다음과 같은 경우

1. 본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본 법 제14조의 적용사항에 관한 특별보고;

2. 본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 호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자 작성 보고서;

3. 사망의 원인이 사망자의 작업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또는 작업중이나 사고, 작업과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인 경우 검시관의 검시판단;

4. 1895년 치명적 사고조사(스코틀랜드)법 또는 1906년 치명적 사고 내지 급사조사(스코틀랜드)법상 사망원인에 대한 공적 조사

그리고 당해 보고서가 위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검시판단에 있어서 그 대상사항과 관련하여 실체화된 시기에 관련 실정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약식절차의 진행은 당해 보고서 작성후 3월이내,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조사 또는 검시판단종결후 3월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

② 관련 실정법 조항에 따른 범죄의 원인이 당해 조항상 또는 조항에 따라 규정된 시한에 또는 시한내 일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데 있는 경우, 당해 범죄는 해당행위를 실행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본 항상의 범죄에 대한 약식절차는 담당집행기관의 판단으로 당해 범죄기소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는 날로부터 6월내에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본 항과 관련하여

1. 특정 일자에 확인된 당해 증거를 명시한 집행기관의 증명서는 해당 사실에 관한 완결된 증거라야 한다; 또한
2. 당해 증명서의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집행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서명된 문서는 당해 증명서로 추정된다.

④ 위의 제3항은 설계, 제작, 수입 또는 공급자인 자에 대한 조항 또는 요구조건에 대한 위반으로서 관련실정법 조항상의 범죄에 적용된다. 또한 위의 제3항에서 “담당집행기관”은 제35조상 또는 기타 당해 범죄와 관련된 책임분야의 집행기관을 말한다.

⑤ 위의 제3항의 스코틀랜드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1. “담당집행기관의 판단으로 당해 범죄기소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는”은 “담당집행기관의 판단으로 당해 기소사항고려에 관한 법무장관 보고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는”으로 대체한다;
2. 제2호 아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1954년 약식절차관할(스코틀랜드)법 (절차개시일) 제23조 제2항은 본 항에 적용된다.

제35조(재판지) 용지 또는 물질과 관련하여 관련 실정법 조항 위반범죄는 집행기관의 책임영역에 적용할 목적 또는 당해 범죄 절차를 다룰 법원 관할권 이관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해당 용지 또는 물질의 소재지로 본다.

제36조(타인의 과실로 인한 죄) ① 관련 실정법 조항상 범죄한 자의 범죄가 타인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경우 당해 타인은 해당 범죄의 책임을 지며, 전술한 자에 대한 절차진행과 관계없이 본 항에 따라 당해 타인은 해당 범죄로 기소되고 유죄평결을 받을 수 있다.

② 제33조상의 범죄가 당해 조항이 정부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에 의해 행해질 수 있거나 행해진 경우, 그 원인이 정부 이외의 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경우 그 자는 해당 범죄의 책임을 진다. 그러한 경우 외에 정부가 해당범죄를 행한 경우 해당 범죄로 기소 내지 유죄평결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조에 선행하는 조항은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37조(법인단체의 죄) ① 관련 실정법 조항상 범죄를 법인단체가 행함에 있어서 그 단체의 대표, 관리자, 사무자 또는 이에 유사한 해당 법인단체의 직원 또는 그러한 지위에서 행하는 자의 동의 또는 뮝인, 또는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해당 직원과 법인단체는 해당 범죄의 책임을 지며 각각 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② 법인단체의 사무가 그 구성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위의 제1항은 해당 구성원의 관리기능과 관련하여 그 행위 내지 태만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단체의 대표로 간주하고 적용된다.

제38조(잉글랜드 및 웨일즈 소송법제에 관한 제한)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관련 실정법 조항상 범죄에 관한 절차는 검사관 또는 검찰총장에 의해 또는 그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39조 (검사관의 기소) ① 검사관은 그 임명권을 가진 집행기관을 대표해 권한을 가진 경우 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도 관련 실정법 조항상 범죄를 치안판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② 본 조는 스코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0조(현실적 한계입증 책임 등) 현실적인 한 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일정 의무 또는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정업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련 실정법 조항상 범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의무 내지 요구조건의 이행을 위한 실제 행위이상은 현실적이지 아니하거나 현실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의무 또는 요구조건의 이행에 더 좋은 현실적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제41조(증거) ① 관련 실정법 조항에 따라 등록부 또는 여타 기록부에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등록은 등록한 자에 불리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상당한 증거로 인정된다.

② 관련 실정법 조항의 미준수와 관련하여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당해 사실은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스코틀랜드에서는 해당 조항 미준수 사실에 관한 상당한 증거로 인정된다.

제42조 (법원의 범죄원인회복명령 또는 특정사안에서의 몰수명령) ① 법원이 해당 행위자가 회복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실정법 조항상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은 처벌에 병행하여 또는 처벌을 대신하여 시한을 정하여 당해 사항과 관련된 원상회복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의 제1항 명령에서 정한 시한은 사안에 따라 본래의 명령 또는 본 항상의 연장명령상의 시한 종료일 전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연장 또는 추가연장될 수 있다.

③ 위의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위의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정한 시한 또는 연장시한 중인 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실정법조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아래의 제5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제33조 제4항 제3호상의 폭발 물체 또는 물질관련 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물체 또는 물질을 몰수 내지 폐기 또는 법원이 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위의 제4항상 절차에서 법원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몰수명령의 불가를 주장하는 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아니하는 한, 몰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장 재정규정

제43조(재정규정) ① 국무장관은 재무부가 승인한 예산액을 위원회의 기능수행이 가능케 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무국의 기능수행이 가능케 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실정법 규정상 또는 규정에 따라 본 항이 적용되는 기능이 부여된 기관의 업무 또는 기관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되는 비용금액에 관하여 시행령을 둘 수 있다.

③ 위의 제2항은 위원회, 사무국, 국무장관, 농어업식품행정장관, 모든 집행기관과 관련실정법규정상 또는 규정에 따라 기능이 부여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④ 본 조에 따른 시행령은 당해 시행령에 따른 비용금액을 지급할 자를 특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용인, 구직자, 직업훈련자, 직업훈련준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른 시행령은 상이한 기능에 따라 또는 상이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능과 관련하여 상이한 비용금액을 결정하거나 정할 수 있다.

⑥ 이 조의 규정을 만드는 권한을 다음 각호에 관해 행사될 수 있다.

1. 농업활동에만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관한 국무장관의 임무에 관해

2. 농업관련목적에만 관계된 문제에 관한 적합한 농업기관의 임무에 관해

⑦ 제6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무에 관한 이 조의 규정은 영국에 적용하고 농수산물식품 장관 및 국무장관이 합동으로 만든 규정이거나, 영국 및 웨일즈에만 적용되고 농수산물식품장관이 만든 규정, 또는 스코틀랜드에만 적용되고 국무장관이 만든 규정이다. 그리고 상기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관 농업당국”은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 및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참조는

1973년 고용 및 직업훈련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산업복귀강좌에 참가하는 사람 및 그러한 강좌에 참석하려는 사람을 각각 포함한다.

⑨ 이 조의 목적상 검사관의 임무수행은 관련법률이 해당기관에게 수여한 임무에 관해 시행기간이 임명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 칙

제44조(관련 실정법 규정상 허가조항관련 항고) ① 관련법률하에서 (농업 라이센스 및 핵기지라이센스이외의) 라이센스 발행할 권리가 있는 기관의 결정에 분개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경우 국무장관에게 공소할 수 있다.

1. 라이센스발급, 라이센스의 개신, 또는 라이센스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거절하는 경우

2. 발급한 라이센스의 기한, 조건, 제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3. 라이센스를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 라이센스의 기한, 조건, 제한을 변경하거나 그 변경을 거절할 경우
4.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취소할 경우.

② 국무장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길 경우 그에게 일어날 것 같은 문제의 성격에 관해 이 조의 공소가 그가 그러한 목적상 임명한 자에게 그를 대신하여 결정되도록 지시한다.

③ 공소결정전에 국무장관은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공소인 및 해당기관이 공소에 출두하거나 공청하기를 바라는지 그 여부를 물을 수 있다.

1. 공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소인 및 해당기관이 출두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할 경우 그 둘에 대한 공청회 없이 결정될 수 있음.
2. 국무장관은 두 당사자가 출두 및 심리에 응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그 두 당사자로 하여금 그렇게 할 기회를 줌.

④ 1971 법정조사법령{1971c.62}국무장관에 의한 법령조사에 적용할 때 그러나 그 법령의 제12조제1항의 규정(결정에 대한 이유진술)에서 국무장관이 취한 결정에 대한 참조는 그를 대신해서 취해진 결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것처럼 공소를 결정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사람이 주최하는 심리에 적용한다.

⑤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이 조 하에서 공소를 결정한 사람 및 그러한 공소를 결정한 국무장관은 그의 결정에 효과가 있는 적합한 지시를 한다.

⑥ 국무장관은 이 조 하에서 그를 대신하여 공소를 심리하거나 결정하도록 임명된 자에게 전 공무원을 대표하는 장관의 승인하에 국무장관이 정한 금액의 보수 및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⑦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라이센스”는 농업라이센스 또는 핵기지 라이센스 이외의 관련법률하의 라이센스를 뜻함.
2. “핵기지 라이센스”는 다음 항의 의미 내에서 핵 설치 또는 핵설치운영을 목적으로 기지를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뜻함.

⑧ 선행하는 항의 목적상 “핵설치”는 다음을 뜻하고 그리고 이 항에서 “핵에너지”는 핵에너지법령1946{1946c.80.}이 지정한 뜻을 갖고, “핵원자로”는 (육지에 붙어 있는 기계류, 장비, 또는 기구를 포함한)시설을 뜻하는데 이 시설은 부가적인 중성자원없이 통제된 연쇄반응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핵분열에 의한 핵에

너지의 생산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1. (육로, 수로, 항로의 수송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원자로이외의)핵원자로
2. 1965핵설치법령{1965c.57.}의 제1조제1항제2호 또는 이 항목의 목적상 규정된 분류 또는 종목의 기타설치로 다음목적으로 고안된 설치.
 - 가. 핵에너지의 생산 또는 사용
 - 나. 핵에너지의 생산이나 사용에 준비되거나 보조되는 과정 및 이온화한 방사선의 방출의 원인을 포함하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
 - 다.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생산이나 사용의 과정에서 생기거나 방사된 물질인 대량의 방사성물질의 보관, 처리, 또는 처분

제45조 (당연 권한) ① 시행기관이 지방관청인 경우 위원회의 의견상 지방관청이 시행임무수행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장관은 선행하는 항하에서 그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고려한 후 지방심의를 열게하며 1972지방정부법령{1972c.70}의 250조의 제2항에서 제5항은 지방심의에 관해 그 조의 제1항의 일반적 사항에 침해됨이 없이 그 조에 입각하여 열린 지방심의에 적용하듯이 지방심의에 적용한다.

③ 국무장관이 그 물질에 관한 심의를 하게 한 후에 지방관청이 시행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만족할 경우 그 지방관청의 의무불이행선언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선행하는 항에 입각하여 관청의 의무불이행을 선언하는 명령은 그 의무불이행을 배상할 목적으로 그 관청(이조 이후로는 “의무불이행관청”으로 언급되는)으로 하여금 구체화된 방식으로 구체화된 명령으로 그들의 시행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관청이 수행하는 임무의 시기 또는 시기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의무불이행관청이 그러한 명령에 포함된 지시에 따르지 못할 경우 국무장관은 직무집행영장으로 명령을 시행하는 대신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의무불이행관청의 시행임무를 사무국에게 전이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⑥ 의무불이행관청의 시행임무가 선행하는 항에 입각하여 전이될 경우 임무수행으로 인해 생긴 사무국이 보증하는 비용은 의무불이행관청이 지불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⑦ 선행하는 항에 입각하여 이 조에 입각하여 시행임무의 전이와 관련하여 의무 불이행관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마치 시행임무가 전이되지 않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관청에 의해 비용이 초래된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 관청이 지불하며 같은 조의 차변에 기입될 것이다.

⑧ 의무 불이행관청이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관청은 문제의 시행임무의 목적상 초래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을 목적과 같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한 권한을 가질 것이다.

⑨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관청의 시행임무를 전이하는 명령은 국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그 관청의 권리, 책임, 의무들을 사무국에게 전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 취소된 경우 국무장관은 취소명령 또는 그 뒤의 명령에 의해 전이된 시행임무의 목적상 사무국이 갖는 권리, 책임, 의무들과 관련하여 그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⑩ 국무장관은 이 조에 입각하여 그가 전에 만든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⑪ 이 조에서 “시행임무”는 지방관청과 관련하여 그 관청의 임무를 시행관청으로 뜻한다.

⑫ 이 조의 스코틀랜드적용에서 제2항의 규정중 “1972지방정부법령{1972c.70}의 제250조제2항중 제5호”라는 단어는 “1973(스코틀랜드)지방정부법령 {1973c.65.}의 제2항내지제8항”이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1975년 5월 16일 이전에는 그 단어에 대해 “1947(스코틀랜드)지방정부법령 {1947c.43.}의 제355조제2항내지제9항으로 대체되고, 제5항중 “직무집행영장의 시행명령을 대신하여”라는 말은 생략될 것이다.

제46조(고지의 처리) ① 검사관에게 전달되는 관련법률이 요구하거나 인가한 공고는 그에게 송달하거나 그의 사무실로 우편배달하거나 남겨 놓는다.

② 검사관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송달된 요구되거나 인가받은 공고는 검사관에게 전해주거나 적합한 주소를 그곳에 남겨 놓거나 그 주소로 우편송달한다.

③ 모든 공고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된다.

1. 법인단체의 경우 그 법인의 비서나 사무원

2. 합자회사인 경우 파트너나 합작사업의 경영권을 가진 사람 또는 스코틀랜드에 서는 회사

④ 이 조와 1889 해석법령의 26조{1889c.63.}의 목적상 (우편송달문서를) 이 조에 적용하며 그러한 공고를 받을 사람의 적합한 주소는 최근 주소로 한다. 다만, 법인단체나 그 단체의 비서나 사무원의 경우 그 단체의 등록된 사무실 또는 이사의 주소로 하며 합자회사나 합작사업의 경영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 합자회사의 이사로 하고 이 항의 목적상 영국이 아닌 해외에 이사가 등록되어 있거나 영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합자회사의 이사는 영국내의 그들의 이사로 한다.

⑤ 그러한 공고를 전달받을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주소이외의 영국내의 주소로 기입할 경우 그를 대신하는 사람이나 그에게 그 공고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받게 한다. 그 주소는 이 조와 1889해석법령{1889c.63}의 목적상 적합한 주소로 간주한다.

⑥ 이 조의 다른 조항에 침해됨이 없이 (법인단체여부와 상관없이) 각 건물의 주인이나 거주자에게 송달되도록 요구되거나 인가된 그러한 공고는 그 건물의 소유주나 거주자에게 우편송달하거나 송달 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주소를 써서 그 건물의 거주자나 고용인으로 보이는 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⑦ 건물의 소유주나 거주자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전술한 공고를 누구에게 송달 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심의 후에도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고는 그 사람을 곁봉에 적어 송달하거나 합리적인 심의 후에도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공고는 그 사람을 곁봉에 적어 송달하거나 공고가 관련하는 건물의 “소유주” 또는 “거주자”라고 써서 송달하는데 이는 그 건물의 거주자나 고용인으로 보이는 책임자에게 전해지도록 하며 그러한 수취인이 없을 경우 건물의 눈에 띄는 장소에 공고 또는 그 복사본을 붙인다.

⑧ 이 조의 선행하는 조항은 공고 송달에 적용되듯이 문서의 전달에도 적용된다.

제47조(민사 책임) ① 이 장의 어떤 것도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없다.

1. 제2조내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8조의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소송권을 수여하는 것으로의 해석
2. 소송을 일으킬 만한 현존하는 법령의 부과하는 의무의 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의 해석
3. 1965 핵설치법령{1965c.5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 해석 (그 법령의 일정조에 입각한 보상권)

- ② 안전보건규정 또는 농업안전보건규정이 부과하는 의무의 위반은 그 규정이 다르게 제시하지않는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소송의 여지가 있다.
- ③ 제15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떤 규정도 제2항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 변호를 허용하지 않는다. :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규정이나 농업안전보건규정은 그 의무의 위반에 관한 소송에서 그 규정이 정하는 변호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령의 규정과 별도로 있는 소송권에 침해되지 않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둘 수 있는 변호인에 침해되지 않는다.
- ⑤ 안전보건규정이나 농업안전보건규정이 다른 식으로 제시하지 않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배제시키거나 제한할 목적의 협의의 조건 또는 그 항에 입각한 책임은 무효화될 수 있다.
- ⑥ 이 조에서“손해”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손상 및 질병을 포함한)개인의 사명 또는 부상을 함축한다.

제48조(정부에 대한 적용) ① 제21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제외한 본 조의 조항, 본 편의 조항 및 본 편에 따른 시행령은 정부에 적용된다.

- ②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은 군주권에 끓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군주권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③ 이 장의 목적상 군주권의 공무원이 제정한 규정은 이 항과 별도로 취급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군주권의 고용인들로 취급된다.
- ④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안전 또는 법적으로 억류된 사람의 안전수감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편리하게 보이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군주권을 면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군주권과 결부된 이 장의 전체 조 또는 하나의 조에 이르는 특정관점에서 면제하는 명령을 내린다.

⑤ 이 조의 명령권한은 법률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은 이후의 명령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⑥ 이 조의 어떤 조항도 여왕의 고유 권한영역에 대해 소송 제기를 인가하지 않으며 이 항은 1947왕권소송법령{1947c.44.}의 제38조제3항의 규정이(여왕의 고유권한영역에 대한 그 법령에서 참조의 해석) 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제49조(계량단위 또는 적절한 계량단위 입법의 수용) ① 관련 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정한다.

1. 관련법률조항
2. 이 장의 일반목적과 관련된 문제이나 관련법률조항에 들어있지 않은 규정의 제정
3. 선행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제정 하에서 만들어졌거나 효력이 있는 규정의 수단은 표시되지 않는 양 대신 계량단위로 표시된 양의 사용 또는 다른 계량단위로 표시된 양대신 규정에서 정한 계량단위를 표시한 양의 사용

② 개정은 편리하고 적합한 용어로 표현된 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관련장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언급한 규정의 효과를 보존하도록 한다.

③ 이 항하에서 관련 장관이 제정한 규정은 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계량단위이외의 단위를 언급하는 단어를 포함할 경우 적합한 장관이 그 조의 실효에 대한 변경없이 그러한 단어가 생략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단어를 폐지한다.

④ 관련 장관은다음각호와 같다.

1. 농업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국무장관
2. 대브리튼이나 연합왕국에 적용하는 농업관련 목적에만 국한되는 조와 관련하여서는 농업부장관
3.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되는 관련조항과 관련하여서는 농수산물식품장관
4. 스코틀랜드에만 적용하는 관련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국무장관

제50조 (관련 실정법규정에 따른 시행령) ① 제1항내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국무장관이 수여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은 위원회가 국무장관에게 부여한 권한내에서 그가 규정을 제정할 목적으로 (수정여부와 상관없이)제안을 실효시키기위해서 또는 그러한 제안을 독립적으로 그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독립적 제안으로 규정을 입안하기 전에 국무부장관은 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게 자문을 구한다.

② 국무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한 제안을 실효화 시키기 위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제안할 경우 규정을 입안하기 전에 위원회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다.

③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입안에 대한 제안을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위원회가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경우 제출 전에 다음 각호의 자에게 자문을 구한다.

1.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정부부처 또는 다른 기관(특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입안에 관한 제안의 경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지방관청을 대표하는 기관, 그리고 전자기법률과 관련한 규정입안의 제안인 경우 국립방사선보호기구)

2. 그러한 제안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국무장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이 항 아래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요구될 경우, 그러한 정부부처 및 기타기관

④ 농수산물식품장관 및 국무장관 또는 그들중 한 장관이 관련법률내에서 어떤 규정을 입안할 것을 제안할 경우 그 둘 또는 한 장관은 규정을 입안하기전에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위원회 및 다른 기관에게 자문을 구한다.

⑤ 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은 농수산물식품장관과 함께 대 브리튼에 대해 국무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규정입안에 관한 권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51조(가정내 고용에 대한 적용 예외) 이 장의 어떤 조항도 한 개인이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는 자신이 가정의 하인으로 고용되었다는 단지 그 이유로 한 개인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52조(작업과 작업중의 정의) ① 이 장의 목적상 “작업”은 고용인이나 자영인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인은 그가 고용된 기간동안 일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영인은 자영인으로서 그가 일하겠다고 결심한 동안 일한다. 그리고 이하 어떤의미에서건간에 “작업” 또는 “작업중”의 표현은 그에 상응하여 해석된다.

② 이 항중 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장의 목적상 “작업” 및 “작업중”의 의미를 연장.

2. 그 규정에서 정한 적용에 따라서 그러한 연관성으로 실효화할 수 있는 관련법률의 제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입안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된다.

1. 농업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은 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에 의해

2. 농업관련목적에만 국한된 활동과 관련하여 적합한 농업기관에 의해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은 농수산물식품장관과 국무장관이 합동으로 제정한 대 브리튼에 적용하는 규정이거나 농수산물식품장관이 제정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다.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농업기관”은 그에 상응하여 해석된다.

제53조 (제1편의 일반적 해석) ① 이 장에서 문맥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은 원예, 과실재배, 씨재배, 낙농업, (살육시점 또는 대 브리튼으로부터 수출하기까지의 가축경영을 포함하는)가축사육, 산림학, 방목지, 목호지, 고리버들, 시판용 채소를 재배하는 밭 및 묘목밭과 같은 땅의 사용, 농지사용을 위한 땅준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농업”은 그에 상응하여 해석된다.

“농업장관”은 농수산물식품장관 및 국무장관을 뜻한다. 농업장관이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두 장관이 협동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농업안전보건규정”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바에 따른다.

“농업라이센스”는 관련법률하의 농업장관들이나 그 둘중하나의 라이센스를 뜻한다. :

“농업활동”은 무역, 비즈니스, (이익여부와 관계없이 수행되는)기타사업의 과정이 외의 농업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 비즈니스, 사업의 과정상 수행되는 농업에 수반하기 쉬운 활동을 포함한다.

“적합한 농업장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대한 관련법률의 적용목적상 농수산물식품장관을 뜻하며 스코틀랜드에 대한 규정적용의 목적상 국무장관을 뜻한다.

“작업중 사용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뜻한다.

1. 작업중인 사람(에만 국한된 여부와 상관없이)이 사용 또는 활동상의 목적으로 고안된 설비

2. 그러한 설비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물품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령”은 실용적안내서 즉 기준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미를 갖는다.

“조건부판매협정”은 상품가격을 할부로 지불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에 관한 협정을 뜻한다. 상품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상품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할부지불에 관한 조건이 협정에 정해진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매도자에게 남아 있다.

“고용계약”은 (직접표현되거나 함축되며, 직접표현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한다.) 고용 또는 도제의 계약을 의미한다.

“신용판매협약”은 판매가격이 할부불입이 가능한 상품의 판매에 관한 협약을 의미하나 조건부판매협약은 아니다.

“가정집”은 (정원, 뜰, 주차장, 옥외변소, 그러한 한 명이상의 거주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기타 부속물을 포함한) 개인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한다. 그리고 “비가정집”은 그에 상응하여 해석된다.

“고용인”은 고용계약 하에서 일하는 개인을 뜻하며 관련된 표현은 그에 상응하여 해석된다.

“시행기관”은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미를 갖는다.

“사무국”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미를 갖는다.

“현존하는 법률조항”은 시행되고 있는 다음규정 즉 그 부칙의 3번째 줄에서 정한 부칙 1에서 언급한 법령의 조항, 규정, 명령, 그렇게 정한 규정하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법적 성격의 기타수단의 조항이다.

“임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나무의 벌목 및 숲에서 자라는 나무의 뽑기와 주요 개종
2. 다른 농업목적을 위한 땅의 사용에 보조되는 삼림지용 땅의 사용

이 장의 일반목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미를 갖는다.

“안전보건규정”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미를 갖는다.

“월부구입협정”은 다음 각호의 조건부 판매협정이외의 협정을 뜻한다.

1. 보증인이나 임대인이 내는 정기불입금에 대한 대가로 보증되거나 (스코틀랜드에서) 임대되는 상품
2. 협정의 조건이 승낙되고 다음 사항이 일어날 경우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상품 소유권.

가. 그 사람이 구매한 선택에 대한 행사

나. 그 협정에 대한 당사자에 다른 정해진 행위의 수행

다. 기타사건의 발생 (월부구매는 그에 상응하여 해석된다.)

“개선공고”는 제21조의 공고를 의미한다.

“검사관”은 제19조에서 지정한 검사관을 뜻한다.

“가축”은 음식, 모, 가죽, 모피 생산을 위해 키우거나 농업활동 수행을 위해 키우는 생물을 뜻한다;

“지방관청”은 다음 각호의 의미를 갖는다.

1. 잉글랜드 및 웨일즈, 주의회, 대 런던 평의회, 구의회, 런던읍 의회, 런던시 평의회,

Inner Temple의 부재무관, Middle Temple의 하부 재무관

2. 스코틀랜드, 지역, 섬 또는 구의회는 1975년 5월 16일을 제외한 경우 마을 의회나 주의회

“해상설치”는 물 속에 있는 광물자원의 개발 또는 그러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 탐사를 위한 설치를 뜻한다.

“개인부상”은 질병이나 개인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조건의 손상을 포함한다.

“설비”는 기계류, 장비, 기구를 포함한다.

“건물”은 모든 장소를 뜻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의미를 갖는다.

1. 차량, 선박, 비행기, 수륙양용차

2. (바닷가 및 물이 간헐적으로 차는 땅을 포함한) 육지상의 설치, (부유하는, 해저에 기거하는, 그곳에 있는 해저오일, 물이나 해저오일로 덮혀있는 기타 육지에 기거하는)해상설치

3. 텐트나 이동성 구조물

“지시한”은 국무장관이 제정한 규정이 지시한 것을 의미한다.

“금지공고”는 제22조의 공고를 뜻한다.

“농업관련목적”은 다음 각호의 의미를 갖는다.

1.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전하는 것

2.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관련된 작업자와 관련된 사람이외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

앞에서 언급한 위험에 관한 제2호의 참조는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석된다.

“관련법률”은 다음을 뜻한다.

1. 이 장 및 안전보건규정, 농업안전보건규정의 조항

2. 현존하는 법률:

“자영인”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한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계약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위해 일을 하는 개인을 뜻한다.

“물질”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형태로 된 천연 또는 인공물질을 뜻한다.

“작업상 사용하는 물질”은 작업자가 (국한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물질을 뜻한다.

“공급”은 물품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책임자나 대리인으로서 판매, 임대, 고용 또는 고용구매에 의한 공급을 뜻한다.

② 제1항중 “농업활동”이라는 정의 내에 농업에 부수되는 활동인 특수한 경우를 결정하는 관계는 그 활동범위와 수행되는 규모 및 다른 관련상황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③ 이 장의 목적상 이 장의 의미 내에서의 농업여부와 상관없이 명령에서 정한 활동은 그 목적을 위한 농업이거나 농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농수산식품장관과 국무장관이 합동으로 제정한 대 브리튼에 적용하는 명령이거나 농수산식품장관이 제정한 영국 및 웨일즈에 적용하는 것, 또는 국무장관이 제정한 스코틀랜드에만 적용하는 명령이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원래의 명령을 제정한 기관의 그 다음명령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은 하원의 결의에 의거한 무효에 따라서 법률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다.

제54조 (제1편의 실리섬 적용) 이 장은 실리 선에 관한 적용에서 그 섬이 지방정부지역인것처럼 또 그 섬의 의회가 지방관청인 것처럼 적용한다.

제2편 고용의료자문 서비스

제55조 (고용의료자문서비스의 기능과 관리책임) ① 다음 각호의 목적상 직업의료자문 서비스가 유지된다.

1. 국무장관 안전보건위원회, 인력관리 위원회, 직업인 및 직업훈련을 받거나 이를 받으려는 사람의 보건에 관련된 기타 기관이 제각기 그러한 사람들의 안전보건 및 개선에 관해 인식해야 하는 문제에 관해 계속적으로 보고 받으며 적절히 자문받을 수 있는 보장.
2. 직업인 및 직업훈련을 받거나 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직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문.
3. 기타 직업과 관련된 국무장관의 임무의 다른 목적.

② 그러한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국무장관이다. 그러나 안전보건위원회나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책임에 관해 국무장관이 제정한 협약의 경우 그러한 협약이 유효한 동안 (국무장관이 아닌)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은 그러한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③ 그러한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간동안 그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업의료고문을 보조할 목적으로, 또는 직업의료고문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는 다른 식으로의 그러한 문제와 연관해서 일어나는 문제의 조사에 관하여 조사, 보조, 준비

및 비용을 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조사하거나 조사를 보조할 목적으로 그 기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연구소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장관이 제정한 협약은 언제든지 그가 종식시킬 수 있으나 (이전의 협약이 운영중단되는 시기로부터 운영되는 협약을 포함한) 항에 준거하여 언제든지 다른 협약의 제정에 침해됨이 없이 한다.

⑤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국무장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관해 협약에 들어갈 것을 지시할 경우 그 것은 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이다.

⑥ 제1항의 규정중 다음 각호의 자도 포함한다.

1.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참조는 1973직업훈련법령{1973c.50.}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산업복귀강좌에 참가하는 사람들.
2. (위에서 언급한 국무장관과 위원회이외의) 직업인, 직업훈련을 받거나 이를 찾는 사람들의 보건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참조는 사용자, 근로자 및 각각의 직업 보건의사를 대표하는 조직.

제56조 (고용의료자문서비스 관리책임 기관의 기능) ① 직업의료자문서비스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기간동안 그 기관은 그러한 책임을 수행할 목적으로 직업 의료고문을 임명할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임용할 사람의 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승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타의 관리들을 임명한다.

1. 그 기관의 국무장관의 경우 행정부장관의 승인
2. 아니면, 그 장관의 동의와 함께 국무장관의 승인

② 완전 등록된 의사가 아닌 한 그는 직업의료고문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③ 그러한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동안 그 기관은 직업의료고문들이나 그들 중한 사람이 이 법령 하에서 또는 다른 식으로, 부여받은 직업의료고문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와 상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협약의 결과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관리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이전의 어떤 임명도 무효화할 수 없으며 변경이 생길 때 보존된 임명은 새 기관이 제정한 것처럼 효력을 계속 가진다.

제57조(비용) ① 국무장관은 이 장이나 다른 곳에서 입각한 기관에 관한 서비스의 목적상 부여되는 직업의료자문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불되는 보수는 규정상 정해진 액수를 규정에 따라 제공한다.

② 이 조의 목적상 직업의료고문의 임무수행은 선행하는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기관에게 부여된 임무의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제43조제4항, 제5항, 제8항의 규정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과 함께 이 조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④ 국무장관이외의 기관이 그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국무장관은 이 조의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그 기관에게 자문을 구한다.

제58조(기타 재정 규정) ① 직업의료자문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동안 그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불한다.

1. 직업의료에 지급되는 월급 또는 보수 및 여행경비 또는 기타 수당
2. 이 장에서 그 기관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출되어 자문을 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 또는 기타 수당,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보상
3. (병상학, 생리학, 방사선검사 및 그와 비슷한 검사를 포함하여)직업의료고문들의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의료검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승인을 받아 기관이 결정하는 여행경비, 생활경비, 또는 수당상실의 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승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그 기관이 국무장관일 경우 국무장관의 승인
2. 제1호 이외의 경우 그 장관의 동의하에 국무장관의 승인

③ 국무장관이외의 기관이 그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경우 국무장관은 재무부가 승인하고 기관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액수를 그 기관에게 지불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59조(담당기관의 계좌관리 및 보고의무) ① 직업의료자문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서비스의 관리와 관련된 적합한 계좌 및 계좌와 관련된 적합한 기록의 유지

2. 국무장관이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지시하는 형태의 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매 회계연도 계좌보고서의 준비
3. 보고서가 관련된 다음 회계연도인 11월말 전에 국무장관, 회계감사관, 최고 감사에게 보고서 복사본의 통보

- ② 회계검사관 및 최고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받은 보고서를 검사, 증명, 보고하며 하원 앞에 각 보고서의 사본을 놓는다.
- ③ 직업의료자문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국무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말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그 해의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수행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무장관은 하원앞에 이 항에 의거하여 만든 보고서 사본을 놓는다.
- ④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협약의 결과로서 직업의료자문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변경할 경우 그 변경사항은 변경전 서비스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게 이 조가 부과한 어떤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의료자문서비스 관리에 책임이 있는 동안 그 기관에게 부여된 어떤 의무도 (부칙 2 아래의 상응하는 의무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국무장관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 ⑥ 이 조에서 “회계년도”는 국무장관이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각 연도의 3월 31일로 끝나는 12달의 기간을 뜻한다.

제60조(보칙) ① 국무장관은 각 지역보건기관이 직업의료고문을 적용할 때 완전등록의사인 관리를 배치하여 고문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18세 미만인 자의 학교의료기록의 상세한 사항 및 의료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항에 입각하여 고문에게 제공된 어떤 개인의 상세한 정보도(그 사람의 동의없이)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문이 밝힐 수 없다.

- ② 스코틀랜드에 적용할 경우 선행하는 항 “각각의”에서 “그것의”에 이르는 단어 대신 “그들중 하나를 배치한 각 보건기구”라는 말로 바꾸면 실효가 있다.
- ③ 국무장관은 하원의 결의에 준거한 무효에 따르는 법률수단이 만든 명령에 따라 그 법령은 국무장관이 비슷한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 이외의 기관이 직업의료 고문으로서 그 직업을 보장할 목적으로 1973 직업훈련법령{1973c.50.}의 제7조 제

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은 관련기관, 또는 법령 {1972c.53.}의 제1 및 제2조의 목적상 또한 1971산업관계법령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기간을 필요로 한다.

{1971c72.}의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상 행정기관에서 그 기관이 지속적인 고용의 이전기간에 대한 참조로 가세된 근로자가 불공평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항아래의 명령은 그 이후의 명령으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④ 제정규정 또는 제정하의 수단에서 수석직업의료고문 또는 부수석직업의료고문에 대한 참조는 직업의료자문서비스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규정의 목적상 임명한 사람에 대한 참조로 한다.

⑤ (이 장의 선행조항이 대체하거나 제1장에 포함된 규정상 불필요하게 받은) 1972직업의료자문서비스법령 {1972c.28.} 제1조 및 제6조, 부칙 1은 실효가 중단된다. 다만, 제1조와 부칙 1에 입각한 어떤 것이 제1장 또는 이 장의 상응하는 조항에 입각하여 수행될 수 있는 한 이 조와 이 법령의 부칙의 폐지로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조항에 입각하여 수행되는 것처럼 실효가 있으며, 이 법령의 그 조의 폐지직전에 실효되고 있는 조항의 명령은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가 있으나 필요한 경우 제43조제2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을 포함하는 수단인 것처럼 제43조 제2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을 포함하는 수단인 것처럼 제43조 제2항,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⑥ (전에 통과되었거나 이 법령과 같은 회기에서 통과된) 법령 또는 문서가 직접적 또는 함축적으로 표현된 제5항에서 언급한 1972법령의 조항에 포함된 제정8을 언급하는 경우 문맥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법령의 상응하는 조항을 참조하여 해석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은(무효와 관련있는) 1889 해석법령의 제38조의 활동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3편 건축법시행령 및 1959년 건축(스코틀랜드)법 개정

제61조 ① 1961 공공보건의 제2장의 규정 {1961c.64.}에 따라서 국무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상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과 관련한 규정 및 건물과 연관

된 서비스, 설비, 장비의 조항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 항의 규정은 건축규제로 인식된다.

② 제1항에서 언급한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 안전, 복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람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보장.

2. 연료 및 파워의 보존

3. 쓰레기, 불법소비, 물의 오용 또는 오염 방지.

③ 건축 법규는 규정된 건축방법, 규정된 재료의 종류, 건물과 관련된 기타 규정된 수단이 사용될 경우 따라야되는 규정의 특정요구조건을 제시하며, 국무장관, 그를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발행한 문서의 참조로 또는 규정된 사람이나 기관의 승인 또는 만족의 참조로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을 갖는다.

④ 건축규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고의 제시

2. 제안된 작업의 계획 또는 이미 실행한 작업의 공탁(공탁한 사본 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3.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계획의 사본에 대한 지방기관의 보유

4. 작업의 검사 및 시험

5. 견본의 획득

⑤ 건축규제는 지정된 종류의 건물, 서비스, 설비, 장비를 건축규제의 조항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⑥ 국무장관은 건축규제의 모든 항목 또는 일부로부터 특정건물, 특정지역, 특정종류의 건물을 면제지시할 수 있으며 그 지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하게 또는 무조건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⑦ 선행하는 조항에서 주어진 지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조건을 허용하는 사람은 최고 4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하며 기소된 이후에 위반이 계속될 경우 하루 최고 50파운드의 벌금을 문다.

⑧ 건축규제 및 주어진 지시나 건축규제와 관련된 수단에 관한 목적상 건물은 규모, 종류, 디자인, 목적, 장소, 기타의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제62조(기존 건물에 관한 건축규제의 적용) ① 건축규제는 다음 각호에 관하

여 제정된다.

1. 건물 및 건물과 관련한 서비스, 설비, 장비의 변경 및 확장
2. 건물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 설비, 장비
3. 건물과 관련한 서비스, 설비, 장비로 다음각 목의 영향을 받는 경우.
 - 가. 건물의 변경 또는 확장
 - 나. 건물과 관련되어 새롭게 변경되거나 확장된 서비스, 설비, 장비
4. 관련된 서비스, 설비, 장비와 함께 건물전체는 1974 작업상의 안전보건시행령의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이나 이의 제안과 관련하여 이 조의 목적상 건물의 건축 구성.
5. 건물과 관련된 서비스, 설비, 장비와 함께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는 건물이나 사용중인 건물의 일부의 방식 내지 상황의 목적상 건물에 대한 사용의 물리적변경, 또는 건물규제상 이 항목의 목적으로 정의된 “사용의 물리적 변경”으로 표현된 의미내에서 부분의 사용의 물리적 변경을 구성하는 방식의 변경.

② 제1항에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되는 한 건축규제는 규정이 실효되는 날짜전에 세워진 건물과 관련하여 (1974 작업상 안전보건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효날짜 이전에 세워진 건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가 대체하는 1936 법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사항에 침해됨이 없이 건축규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상 부칙 5에서 언급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건물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규정 뿐만 아니라) 건물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수행될 일을 필요로 한다.

③ 건축규제와 관련된 법령은 부칙 6의 제 I 장에 대한 개정에 따라 효력이 있다.

④ 1936법령의 제65조, 1961법령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제3항의 규정이 실효된 후에 효력이 있으며 부칙 6의 제Ⅱ장에 규정되어 있다.

⑤ (특정건물에 관한 건축규제의 면제) 1936법령의 제71조의 규정은 효력이 중단된다.

⑥ 이 법령의 제4조제1항의 폐지 직후에 1961법령의 조항은 법령의 그 폐지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 조가 대체하는 1936법령의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같은 효력이 있다.

제62조 (건축 규제가 제공하는 추후 문제) ① 건축규제가 적용하는 작업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정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정된 상황의 지방관청이 지정된 사람에게 자문을 요구하는 규정을 건축규제로 제정할 수 있다.

② 건축규제는

1. 지방관청이 지정된 종류의 문제에 관한 건축 규제의 요구 사항이 현재 또는 미래에 만족스럽다는 증거로서 그 문제와 관련하여 지정된 종류의 사람 또는 특별한 경우 국무장관이 직접 지명한 사람의 그러한 취지의 인가증을 수락한다.
2. 지정한 종류의 문제에 관한 건축 규제의 요구사항이 특별한 경우에 만족스러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관련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취지의 인가증을 지방관청이 발행하여 규정에 따르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증거가 되는 인가증을 제공한다.
3.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 가. 선행하는 항목에서 언급한 인가증이 언급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정된 기관에 공탁되지 않는 한 지정한 상황에서 지정한 종류의 문제에 관여하는 지정된 종류의 작업 수행 금지.
 - 나. 그러한 문의에 관해 국무장관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건축규제는 건축규제와 관련된 지정된 임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정된 비용을 지방관청이 지불하는 것을 인가한다.

④ 건축규제는 건축규제와 관련된 지방관청이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방 기관 대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건축 규제와 관련된 지정된 법령 및 지방관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법령에서 지정된 종류의 사람과 관련하여 (지정된 수정이 첨부된) 적용하는 규정의 지정된 조항을 제시한다.

⑤ 국무장관에게 그 법령이 건축규제와 관련한 법령하에서 제정된 또는 포함된 조항과 불일치하거나 결과적으로 변경이 필요 또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건축 규제는 폐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항은 이 법령 또는 1936 법령의 제61조내 지제71조, 1961법령의 부칙 1의 제4조내지 제11조이외의 이 법령전 또는 같은 회기에서 통과된 다른 법령의 제정에 적용한다.

제63조(계획 승인에 대한 기타 조항) ① 건축 법규에 의거하여 제안된 작업의 계획을 담당하는 지방 관청은, 지시된 경우에는, 그 계획들을 그 규정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 관청이 어떤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그러한 계획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

1. 그들은 그 제안된 작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계있는 조건.
2. 그들은 그들이 지시한 바와 같은 자세한 계획안의 제출이 완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법규에 따라서 그들이 인가해 줄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는, 그 건을 처리하지 않음을 확실히 하는 조건.

② 자세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에 관한 것 이외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관청에 의거

부과된 어떤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될 상황을 허용하는 자는, 최고 400 파운드의 벌금과, 이에 덧붙여서, 그가 유죄로 선고된 날로부터 그 위반이 지속되는 해당일마다 매일 최고 50 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③ 건축법규에 의거하여 제안된 작업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방 관청은, 그 계획이 결점이 있거나 그 작업이 건축 규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잠정적으로 그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의 판단에 그 결점을 보완하거나 그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수정안의 내용 승인을 고지할 때 명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만일, 지시된 시간이 내에 지시된 방식으로, 그 제출된 계획안의 대표자가 그 해당 관청에게 그가 그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고지하면, 그 계획안은 상기의 수정안을 조건으로 하여 통과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획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의 계획안들이 잠정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1939년 법 제64조제1항내지제3항 항목은, 그들이 앞서 기술한 내용수정이 있다는 전제로 효력을 갖게 된다.

⑤ 제안된 작업의 계획안들이 1936년 법령에 입각하여 지방관청에 의해서 승인된 경우에는, 건축법규에 의거하여 대표자로서 그 계획안을 지방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통과된 계획안으로부터의 이탈이나 일탈에 대한 관청의 승인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이탈이나 일탈의 계획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해당 조는, 원래 처음에 그 계획안이 접수되었을 때 그 사항이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항에 입각하여 제출된 계획안에 관련되어서도 적용될 것이다.

⑥ 현존하는 시행령에 따라서(그것이 확실히 고정화되어 분류되었든지 말로 설명되었든지 간에), 지시된 종류의 건물의 계획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1. 그 건물에 대한 계획은, 건축 법규에 의거하여, 1936년 법령의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관청에 제출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장관은, 건축 법규의 실질적인 요구들이, 적용되는 한, 그 계획된 건물과 관계되어 또는 그 건물에 의해서 준수될 것이라고 그가 납득하지 않는다면 이를 승인하지 못한다.
3. 장관에 의한 계획안의 승인은, 앞서 기술한 취지에 따라, 지방 관청이 승인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다.

4. 장관은 그 계획된 건물에 대해, 1961년 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부장관이나 지방 관청에 부여된, 건축 법규의 요구의 면제 및 완화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권한은 제외). 그러나 이 권한은, 지방 관청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협의 (지방관청의 협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이 아닌 것)에 관한 유사 요구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그리고 국무부장관의 경우에는 1961년 법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 (건축법규 완화제안을 제한하기 위함) 등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적용된다.

⑦ 앞 조항에서의 “현존 시행령”이란 도시와 시골을 위한 관련 시행령 이외에 해당 조 이전에 지나온 시행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6항제4호의 규정을 제외한 권력은 지방관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다.

제64조(영구건물에 적합한 재료에 관한 특별 조항) ① 이 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 그 설명된 부분과 관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이 항목의 취지로 지시되어있는 유형의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 그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의 작업.

2. 이 항목의 취지에 따라 정해지는 유형의 서비스, 설비,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작업으로서, 건물 안에서 또는 그 건물과 관련하여 규정되는 작업.

② 국무부장관은 건축법규에 의해서

1. 그의 견해로 보아, 그 건물의 용도를 고려하거나 그런 유형의 일부분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부품이나 재료를 고려하였을 때, 그 유형의 재료나 부품이, 아무 조건도 없이 영구건물의 특별한 일부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부품이나 재료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

2. 그의 견해로 보아, 어떤 유형의 서비스, 시설 및 설비가, 규정된 유형의 서비스, 시설 설비의 측면을 고려하거나 그 빌딩의 용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는 해당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서비스 시설 및 설비의 유형을 규정할 수 있다.

③ 제안된 작업계획안이, 건축 법규에 의거하여, 지방관청에 제출되었고, 그 계획안은 계획된 작업이 이 조가 적용되는 작업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구성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에, 그 지방관청은 계획안이 법규를 준수하였더라도, 그 계획안을 거부하거나 그 계획안을 통과시킬 때, 이 조가 적용되는 작업이나 관련건물(그 관청이 그 계획안을 통과시킬 때 지시하면서)이 제거되어야 하는 기간을 정확히 명기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 관련 건물의 용도 및 이 조가 적용되는 작업을 고려하여, 그들이 합당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1971년도 도시지방계획법의 제3장과 제4장에 의해서 부과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다른 부과조건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조건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건축 규제에 의해서 계획안이 지방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나 그렇게 제출되지 않은 작업의 경우에는, 만일 그 작업이 그 관청의 판단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그 관청은 그 조항들의 위반과 관련 소송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작업이나 관련 빌딩이 제거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언급된 계획안을 통과할 때 제3항에 입각하여 부과될 수도 있었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부과된 조건에 관하여 그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사전 통고를 해주어야 한다.

⑤ 만일, 지방관청의 판단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의 계획안은 건축규정에 의해서 그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또 제출되지도 않았을 때, 그 관청은 언제라도 그 작업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그 작업이 제거되어야 하는 기간을 명기할 수 있으며 그들이 판단에 필요할 경우에는, 만일 그 작업의 계획안이 제출되는 것이 요구되고 또 제출되었다고 했을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그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부과되었었을 수도 있었던 조건을 부과한다.

⑥ 지방관청은 때때로, 이조에 입각하여, 어떤 결의된 기간을 연장하거나 어떤 부과된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신청이 관련 건물의 소유주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닐 경우, 그들이 부과된 조건을 다양화하는 그들의 권한은, 증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이나 건물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⑦ 지방관청이 이 조에 입각하여 계획안을 거부하거나, 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조건의 부과 또는 변경 신청 등에 있어서 취한 조치에 의해 침해를 입은 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국무부장관에게 상소할 수 있다.

⑧ 이 조가 적용되는 업무나 관련 건물을 고려하여, 이 항에 입각하여 일정 기간

이 정해졌을 때, 그 건물의 소유주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작업이나 건물을 고지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건물이나 작업을 제거하여야 한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방관청은 그 작업이나 건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변상을 그 소유주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⑨ 아래의 사람은 이 조에 입각하여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되는 조건을 허용한 사람 또는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최고 400파운드의 벌금과, 그가 유죄선고를 받은 이후 그 위반이 계속되는 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물이 지속되기로 허용된 기간동안에 걸쳐서 매일 최고 5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입각한 지방 관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⑩ 이 조에서 “해당 건물”이란, 특별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의미한다.

⑪ 1936년 법령의 제53조(이 조의 앞 조항에 의해서 대체된)는 효력을 잃는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건축 법규, 기간의 고지, 조건의 부과 등의 모든 내용은, 이 조에 의해서 마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작된 모든 것은 이 조에 입각하여 시작된 것처럼 이 법령에 입각해서도 계속된다. 그러나, 그 조가 효력을 잃을 때쯤에 미결된 상태로 진행중이던,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와 그 상소에서 파생되는 절차들은 그 조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간주되어 계속된다.

제65조(계속되는 요건) ① 건축 법규는, 국무부장관이, 그런 요건과 관련 조항으로서의 규정에서 지시되는 건축 법규의 조항을 고려했을 때, 그 조항의 취지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계속적인 요건을, 건축 법규가 적용되는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부과한다 ; 그러나 이러한 이 항 때문에 부과된 지속적인 요건은, 그 요건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지시된 건축 법규가 그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한, 건물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

② 건축 법규는 어떤 규정된 종류 (그 건물의 건립시기나, 그 건물 건립의 시점에서 건축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의 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문제의 모두나 일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요건을 과할 것이며, 건축 법규의 적용을 제한하는, 1936년 법령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많은 부분들은 이 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 그 유형의 건물과 관련되어서 또는 그 건물 안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시설, 설비의 사용을 결정하는 조건
2. 공급되는 서비스, 시설, 설비의 검사와 유지
3. 정해진 관청에 정해진 서비스,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보고

③ 만일에 개인이, 이 조에 의해서 부과된, 지속적인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관청은, 그 위반에 대해 벌금형에 대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위반사항을 법적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처를 취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된 합당한 비용에 대한 변제를 해당개인에게 요구할 수 도 있다.

④ 지방관청이, 어떤 조처를 취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들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그 항과 관계된 위반사항이 발생한 빌딩의 소유주나 입주자에게 그 조처나 행동을 취하도록 고지해서 요구할 수 있다.

탄원과 관계된 1936년 법령 제12장에서는, 작업 집행의 요구 통지와 시행이 이 조 항과 연관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작업 집행의 참고 조항에 대한 수정은 작업 집행에 대한 참고 사항이나 기타 법령대로 설명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작업에 대한 참고 사항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⑤ 1961년 법령 제6조내지제8조의 규정(건축 법규 및 관련 조항들에서 요구 사항을 완화시키거나 면제해주는 법령)은, 다음의 수정내용에 따르게되는 이 조에 의해 부과된 지속적인 요건과 관련되어 효력을 갖는다. 1. 1961년 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사항은, 만일 그것이 그렇게 규정된다면, 지시 사항에서 명기되는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효력을 잃게 된다.

2. 1961년 법령 제7조(이 법령에 의해 수정되었듯이)제1항중 조건부로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언급에는 일정기간동안만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66조(건축법규의 완화유형) ① 만일 국무부장관이 건축 법규의 요구를 시행함이 어떤 특별한 유형의 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신청서 상이나 자발적으로, 일반적으로나 조건 없이 또는 그 지시 사항에 명기된 조건의 따르는 조건으로, 그 요구 사항을 면제하거나 완화시키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는 곧 그 규정의 면제나 완화와 연결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사항은 만일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 지시 사항에 명기된 기간의 만료일에 효력을 잃으며, 국무부장관의 후속 조처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

③ 건축 법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는 사람에게 국무부장관에게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61년 법령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이 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들은 경우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정할 것이다.

국무부장관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 항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면제한다면

④ 이 조에 입각한 지시를 주기 이전에 국무부장관은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무부장관이 이 조에 입각하여 지시를 내릴 때는 그는 그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발표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입각하여 주어진 지시에 명기된 어떤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될 조건을 허용하는 사람은 최고 400 파운드의 벌금과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그 위반사항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1일에 최고 50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⑦ 만일 어떤 때라도, 건축 규제의 완화나 면제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된다. 다만 그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은 그 지시 사항(그 안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의 계속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제안된 작업의 계획안이, 건축 법규에 따라서, 지방관청에 제출된 경우
2. 런던 건축 법령 (1939년도 수정판)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고지서가 그 지역의 측량관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⑧ 제67조 및 이 조에서의 “건축 문제”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축 법규가 적용되는 건축 및 기타 관련사항을 의미한다.

제67조(건축의 유형을 승인하는 국무부장관의 권한) ① 이 조의 다음의 규정은

국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승인 신청상이나 자발적으로, 어떤 유형의 ‘건축 문제’가 일반적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의 건축 법규의 특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권한을 국무부장관에게 준다는 점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② 이 조에 입각한 건축 문제의 유형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양식과 그에 포함된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건축 법규의 요구 사항을 따르게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부장관이 어떤 유형의 ‘건축 문제’가 일반적 또는 특별한 경우의 건축 법규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기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그 증명서가 관련된 건축 문제의 유형
2. 그 증명서가 관련된 건축 규제의 요건
3. 적용될 경우, 그 증명서가 적용되는 종류

④ 이 조에 입각한 증명서는, 만일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 증명서에 명기된 기간이 종료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

⑤ 이 조에 입각한 증명서가 효력이 있는 한, 그 증명서와 관련된 유형의 건축문제가 관련된 경우에, 그 해당 건축문제가 같은 유형이며, 그것이 이 증명서가 적용되는 경우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건축문제는 그 경우에 그 증명서와 관련된 건축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⑥ 국무부장관은 이 조에 입각하여, 그에게 제출된 신청 건에 대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증명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제출된 신청에 관해서 발행된 증명서의 경우에, 국무부장관이 그것을 그 사람이 신청해서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부장관은 그것을 변경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고지를 해주어야 한다.

⑦ 건축 법규는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국무부장관에게 규정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항에 의해 생긴 규정은, 1961년 법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국무부장관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 항에 의해서 지불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⑧ 국무부장관은 이 조에 입각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청에 관하여 발행된 증명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전에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국무부장관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고지를 해주어야 한다.

⑨ 국무부장관이 이 조에 입각하여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그렇게 하여 발행된 증명서를 취소하는 경우, 그는 그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⑩ 이 조에 입각한 증명서가 언제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거나, 이 조의 선행 규정들에 입각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된다 해도 그전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1. 제안된 작업의 계획안이, 건축 법규에 따라서, 지방관청에 제출된 경우
2. 런던 건축 법령 (1939년도 수정판)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고지서가 그 지역의 측량관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⑪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변경을 취지로 하는 일정한 경우들은, 국무부장관의 판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⑫ 국무부장관은, 국무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이 조에 의해서 그에게 수여된 승인 권한을, 건축법규에 의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그리고 그러한 권한이 당분간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임되는 한,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많은 부분을 제외한 이 조의 앞의 규정들과 그 조항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 법규는, 국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되면서, 효력을 갖는다.

제68조(건축 법규와 일치하는 시험의 시행이나 요구 권한) ① 제2항의 규정은 지방관청이, 그들이 시행을 담당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한 건축 규제가 적용되는 작업이나 계획된 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이나 그 작업과 관련되어 수행되거나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이, 건축법규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② 지방관청은 그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1. 그 작업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일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그 요구 사항에서 명시된 작업이나 그와 관련된 합당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권한

2. 그들 자신이 그 작업이나 그와 관련된 합당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그러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표본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③ 제2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항에 입각하여 테스트 중에 요구되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문제들 중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어떤 건물의 위치의 토질이나 하부 토질의 실험

2.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예정된 어떤 재료, 부품 또는 부품의 결합 등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예정된 서비스, 설시 및 시설 등에 대한 테스트

④ 지방관청은, 그 건물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지속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위반이, 어떤 건물의 경우에, 있는지, 또는 있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그 빌딩의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이 항에 입각한 요구사항 중에 명기된 합당한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 그들 자신에게 앞서의 항에 입각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는 테스트를 스스로에게 요구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그런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⑤ 이 조에 입각하여 요구되는 어떤 테스트의 수행 비용은 그 본인에 의해서 지불된다. :

지방관청에 제출된 신청건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다면, 그러한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지시 사항에 명기된 바대로 비용의 일부를, 지방관청이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들의 합리성에 관하여 지방관청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그 개인이 신청하자마자, 즉결 재판소에 의해서 판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법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지방관청이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이 조에 입각하여 관청에 의해서 그에게 부과된 요구 사항 중에 명시된 어떤 테스트의 합리성에 관한 질문

2. 관청이 위의 개인이 제출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사항

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질문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에 부과된 지시 사항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질문

제69조(어떤 조항에 입각하여 국무부장관에게의 상소 등에 관련되는 조항들)

① 1936년 법령 제64조, 1961년 법령 제7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부장관에게 상소(재심요청)를 할 때, 국무부장관은 자신의 재량으로, 상소자(재심요청자)와 지방관청에게 국무부장관이 그 취지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앞에 출정하여 증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재심 요청)를 종결하자마자, 국무부장관은 그가 생각하기에 그의 결정을 실시하는데 적당한 지시 사항을 내릴 수 있다.

③ 국무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소송에서 결정을 할 때 관련 인물이나 지방관청은 그 결정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과 같은 상소에 관한

2. 1936년 법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언급에 관한

3. 지시를 내리는 권한이 지방관청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1961년 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지시 사항 신청에 관한

이 항에서 "관련 인물"이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소의 경우에는, 그 상소자

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개인의 신청(지방관청과 공동으로)에 대해 그 언급이 있었던 경우의 그 신청 당사자

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자

④ 그러한 상소나 앞서의 항들에서 언급된 상소, 위임이나 신청의 소송단계에서, 국무부장관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형태로 절차상에서 발생되는 법률상의 문제를 진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항에 의해서 진술되는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은 1925년 (영국)대법원 법령(1925 c. 49) (고등법원 판결로부터 오는 항소를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한 항소법원의 사법권) 제27조의 규정에 준하여 법원의 판결인 것으로 추정된다.

⑤ 이 조에 의해서 생기는 항소 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규

칙을 만드는 권한에는 다음의 법칙을 만드는 권한도 포함된다.

1. 국무부장관에 의한 결정과 재심리를 위하여, 법원의 견해나 지시 하에 그 건을 하급심으로 반송하는 것을 고려하여, 고등법원이나 항소 법원의 권한을 명기할 것
2. 일반적으로 또는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황에서, 국무부장관을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 당사자로서 취급하여, 출두 및 그에 따라서 증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들과 관련된 법원의 규칙들은, 고등법원에 대한 상소들이 분립된 법원에서 심리되고 해결되도록 요청됨에 따라, 1925년 법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많은 부분을 제외하도록 규정될 것이다 그러나 항소 법원에 대한 어떤 항소도, 고등법원이나 항소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 조에 의해서 소송으로 제기될 수는 없다.

⑦ 이 조에서 ‘결정’이란 지시를 포함하며, 결정권에 대한 언급이란 그에 따라 해석될 것이다.

⑧ 1961년 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 법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와 관련하여, 국무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고려하여 보완 조항들을 포함할 것이다.

제70조(런던내부의 건축 규제 권리) ① 다음의 시행 규칙, 말하자면 1936년 법령의 제61조, 제62조, 제67조 및 1961년 법령 제4조제2항, 제5항내지제7항, 제5조 및 제9조는(이 부분에서는, 75조와 부칙 7을 제외한다.) 그 법들이 영국과 웨일즈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런던 시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의해서 확장된 권리가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항은, 그것이 런던 시내에 적용되어 효력을 갖기 전에는, 그 자체로는, 어떤 건축 규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② 1930 ~ 1939년 런던 건축 법령의 의미내에서 타지역 정부나 지역 측량가들이 건축 법규에 따라 그 규제를 시행하는 책무를 갖게되어있는 정도를 제외한 건축 규제를 런던 시내에 시행하는 것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런던 상임 이사회의 의무가 될 것이다.

③ 제62조제4항 또는 이 조에 의해서, 지방 정부나 다른 명기된 개인 또는 단체(지역 정부 제외)는, 런던 시내에 유효한 건축 법규에 입각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규정된 기능을 실행하고 수행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건축법규는, 제62조제4항

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만, 그 규정이 런던 외부의 지역 정부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나 개인 또는 개인의 단체에 적용되는 제1항의 규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규정된 수정조항과 함께, 런던 정부 법령(1963) 부칙 11의 제1장 중 제12항과 제34항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규정할 것이다.

④ 이 조의 조항들의 결과로서 또는 런던 시내 부분에 적용되는 건축 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조항들과의 관계에서, 이 항이 적용되는 조항을 철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국무부장관이 판단할 경우,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건축법규에서 그것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다음의 조항에 적용된다.

1. 1930년부터 1939년까지의 런던 건축법의 조항들
2. 이 장 이외에 다른 법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이 법령과 같은 회기나 그 이전 회기에 통과된 다른 법령 등에서 포함된 조항이
 - 가. 런던시내의 어떤 부분에 적용될 때
 - 나. 건축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항들이나 그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런던 시내의 전체나 일부분에 대한 조례, 또는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계가 있을 때
3. 앞서 말한 법령에 입각하여 효력이 생기거나, 만들어진 조례 또는 제2호 나목에서 언급된 조례

⑥ (1961년 법령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앞서의 항들이 적용되는 어떤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건축 법규를 제정하기 전에, 런던 상임 이사회나 국무부장관의 판단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다른 지역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이 항에서 ‘런던 시내’란 런던의 내부 자치 도시들, 그 도시 자체, 그리고 시내의 사원이나 중 사원 등을 의미한다.

⑧ 1963년 런던 정부 법 중 부칙 11 제1장에서 공중 보건 법의 개정

1. 12항목에서 “제53조내지제55조 및 제57조내지제71조”를 “제54조, 제55조, 제57조내지제60조, 제64조내지제66조, 제69조, 제70조(폐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및 제71조”로 한다.
2. 34항목에서 “제4조 내지 제11조”라는 말은 “제4조제3항, 제4항, 제6조 내지 제8

조 및 제10조(1974년 작업중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떤 실행 규칙을 수정한 경우는 제외) 제11조"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71조(민사상의 책임) ① 이 조의 조항들에 따라서, 건축 법규에 부과된 의무의 위반은, 그 법규가 다른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피해를 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그리고 건축법규는, 그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이 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의무를 위반하는 소송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된 답변서를 정할 것이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규정들에서 정해진 답변서와 제1항의 규정은 효력을 갖기 전에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만일 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런 의무의 위반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1936년 법령 제62조 또는 동일 법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건물의 경우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 조의 어느 것도 다음 각호의 사항의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 이 장 또는 다른 건축 법규와 관계가 있는 시행령과 관련되어 발생하였거나 그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의 위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건축 법규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의 위반

또 이 위반은 소송할 수 있으며, 건축 법규와 관련된 시행 규칙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이 조에서 '손해'란 어떤 사람의 사망이나 피해(한 사람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상태의 불구와 질병을 포함하여)를 포함한다.

제72조(왕가에의 적용) ① 건축 법규가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법규의 조항들은

1. 만일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이나 그 일의 대표자가 왕가정부가 없을 때 적용되었을 것과 마찬가지로, 왕가 정부에 의해서 또는 왕가 정부를 대표하여(그 것이 왕실의 건물과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것으로 예정된 작업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2. 지속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그들이 왕가 정부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왕가정부에(왕가 건물과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적용될 것이다.

② 건축 법규가 실체법적인 조항에 관련하여 규정하는 한, 런던 시내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 사항들은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계획인 작업과 관련하여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인 요구 사항으로 구성되는 한, 왕가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것으로 계획된 작업의 경우에 있어서, 왕가 당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그 요구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처럼 왕권에 적용될 것이다.

이 항에서 '런던 시내'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③ 건축 법규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법규 및 그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왕가 건물과 관련하여, 왕가 당국에 의해서 또는 왕가가 대표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기로 계획된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제65조 및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 법규는, 그 건물이 왕가 건물이 아니었더라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왕족 건물과 관련하여 왕가 당국이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그 업무가 한 개인에 의해서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이라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왕가 당국이 아닌 개인을 대표하여 정부 부처가 수행하거나 수행하기로 계획한 업무와 관련하여도 적용된다.

④ 1936년 법령 제341조 (그 법력의 조항들을 왕가 자산에도 적용시키는 권한) 는 건축 법규와 관련된 규정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제71조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축 법규는 이 조의 앞서의 조항들에 따라서 그들이 적용됨에 있어서, 건축 법규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와 관련하여 적용될 것이다.

⑥ 왕가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표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기로 계획된 작업의 경우와 왕가가 어떤 지속적인 요구 사항에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당국은 건축 법규의 실체적인 요구 사항, 또 경우에 따라서는 1961년 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부장관이나 지방 정부에게 이양된 문제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면제하거나 완화시키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1961년 법령은, 그러나, 지역 정부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협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지역 정부와의 협의에 관한 앞서 말한 6조의 요건은 아니다)에 따르며, 국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그 법령 (건축 법규를 완화하려는 제안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요건에 따르게 된다.

⑦ 앞서의 항에서 제외되는 권한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관청에 의

해서가 아닌 다른 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지를 위해서는, 다른 왕가 당국을 대표하여 일하는 부처에 의해서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계획인 작업은 그 정부 부처(왕가 정부를 대표하거나 그 왕가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를 대표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기로 예정된 것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⑨ 이 조에서 지속적인 요구 사항"은 제65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건축 법규상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의미하며,"왕가 정부"란 왕족 재산 관리인, 왕족 장관, 정부 부처, 왕족을 대표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여왕의 개인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외) 또는 랑카스터의 공작이나 콘월의 공작의 권리로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왕가 빌딩"이란 왕가나 공작의 소유권이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왕가 소유권"이란 왕가의 권리에 속하는 권한으로 여왕에게 또는 정부 부처에 속하는 소유권 또는 정부 부처의 목적으로 왕비에게 신탁되어 있는 소유권을 의미한다.

"공령소유권"이란 랑카스터 공작의 권리로서 여왕에게 속하거나 또는 콘월 공작에게 속하는 소유권을 의미한다.

⑩ 만일 왕가의 정부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은 권한들을 행사하는 특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에 입각하여 어떤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재무성으로 넘겨질 것이며 그 재무성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⑪ 이 조의 앞서의 조항들은, 어떤 필요한 수정과 함께, 1936년 법령(이) 장에 의해서 대체된)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만들어진 건축 법규의 의미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에 있어서 재료의 변화를 주는데 적용될 것이다.

제73조(영국의 원자에너지 기구에의 적용) 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 제72조의 규정들은 영국의 원자에너지 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이 항에서는 기구라고 칭한다)

1. 그 기구가 왕가의 정부인 것처럼

2. 그 기구에 속하거나 그 기구에 의해서 점유 당한 건물이 왕가의 건물인 것처럼
3. 제1항중 왕가의 정부가 아닌 것에 대한 언급은 왕가 정부나 이 기관에의 언급인 듯이

그러나, 앞서 말한 조항들은, 이 항에 의해서, 기구가 입주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거주지 건물이나 사무실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조항들을 따라, 건축 법규 및 그와 관련된 실행 규칙들은 이 기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입주하고 있는 건물, 거주지용 건물이나 사무실이 아닌 건물들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4조 ('건물'의 의미, 건축에 대한 언급, 건축 법규 등의 의미) ① 이 항이 적용되는 시행 규칙의 취지를 위해서

1. 건물이란, 문맥상에서 다른 식으로 요구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영원하거나 일시적인 건물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나 성질(영구 건물이거나 일시적 건물이거나)의 구조나 건축물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구조나 건립"은 정해진 상황에서 차량, 선박, 호버크라프트, 비행기, 그리고 다른 종류의 움직이는 물체를 포함할 것이다 (국무부장관의 견해로 그것들을 건물로 다루는 것이 정당화되었을 경우.)

2. 그 문맥에 의해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다면, 한 건물에 대한 언급은 건물의 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며, 건물과 관련한 서비스, 시설, 설비의 조항에의 언급은 건물에 물건을 첨부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된 물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건축이나 건물의 건립에의 언급은 다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가. 건물의 건립이나 건축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건축법규상에 명시된 바대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것이든지, 벽과 건물 사이에 열려진 공간을 만드는 것이든지 간에).

나. 이동 가능한 물체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로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건축"과 "건립"은 그에 따라서 해석될 것이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1936년 법령 중 제61조내지제71조의 규정에 적용되며, 건축 법규와 관련된 또는 제61조내지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의미를 내포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의 문맥상에서 "건물들"이나 "건물"이라는 것을 언

급한 시행령(1936년 법령이나 이 법령에서 포함되었는지 아니든지)에도 적용된다.

③ 그 문맥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법령이나 다른 시행령에서의 건축 법규에 대한 언급은, 1961년 법령 제6조, 제66조 또는 다른 시행령에 의해서, 당분간, 수정되거나, 면제되거나, 포기되거나 완화되는 건축 법규의 요구 사항들과 관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이 그 경우에 적용되었듯이 건축 법규에의 언급으로 해석될 것이다.

제75조(1959년 스코틀랜드 건축법의 개정) 1959년 스코틀랜드 건축법(1959 c. 24)은 부칙 7의 개정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76조 ① 다음의 조항들은 하나로 해석되며 1936년 법령 제12장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항들이 그 법령의 제2장에 포함된 것처럼,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1. 건축법규와 관련되는 1936년 법령의 제2장의 부분들
2. 건축규제와 관련되는 1961년 법령의 제2장의 부분들
3. 75조와 부칙 7을 제외한 이 장

② 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항들을 취지로 하여

1. "지역 관청"이란 지역 의회, 런던 상임 이사회, 그리고 런던 시의회, 시내 사원의 지사 재무관이나 중사원의 하위 재무관을 의미하며 시설리섬의 의회를 포함한다

2. 1936년 법령 제1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중 "지역 관청"의 정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1961년 법령 제1조제1항(그 법령의 제2장은 1936년 법령의 제2장과 같은 것으로 해석됨)에서, "이 법령의 제2장"라는 단어 후에는, ", 건축 법규와 관련되는 만큼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삽입될 것이다.

③ 이 장에서

"1936년 법령"은 1936년 대중보건법을 의미한다 ; (1936년 c. 49)

"1961년 법령"은 1961년 대중보건법을 의미한다. ; (1961 c. 64) "건축 법규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란 건물의 건축 및 건물 안에서나 건물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 및 설비의 조항들을 고려한 건축 법규의 요구를 의미하며 이는 절차상의 요건과는 별도이다.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포함)

④ 이 장에서, 1936년 법령 제61조내지제71호 및 1961년 법령 제4조내지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된"이란 건축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었다는 의미이다.

제4편 보칙 및 일반규정

제77조(1970년 방사선 보호법 개정) ① 1970년 방사선 보호법 제1조는{1970 c. 46.} (국립 방사선 보호원의 설립과 기능) 이 항의 다음 조항들에 따라서 개정될 것이다.

1. 제6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의2 보건 및 안전 위원회 관련기능들에 대한 문제들과 관계가 있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보호원은 제7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그 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정책 사항들을 존중할 것이다.

2. 제7항의 2 및 제7항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항의2)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만일 보건부장관에 의해서 지시된다면, 지시사항에 따라서 결정되었듯이, 이온화하거나 다른 방사선(전자 자기가 아닌 것을 포함하여)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과 같은 일을 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 및 안전 위원회와의 협력을 맺는 것은, 이 보호원의 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호원은 이 항에 입각하여 지시를 준수하여 체결된 어떤 협약도 수행할 권한이 있다.

(7항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관한 요구사항은 제7항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8항중 "제7항" 다음에 "또는 제7항의2"라는 말이 삽입된다.

② 1970년 방사선 보호법 제2조제6항중, "지명된 검사관" 이란 말부터 그 항의 마지막 사이에 있는 말은 "1974년 작업 중 보건 및 안전법 19조에 입각하여 보건 및 안전 심사관 (앞서 말한 보호원에 의해서 점유된 건물에 관하여 1963년 사무실, 상점 및 철도의 건조물에 관한 법 1에서 51조와 그에 입각한 규정들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된 심사관"이라는 말로 대체될 것이다.

제78조(1971년 화재경보법 개정) ① 1971년 화재경보법 {1971. c. 40}은 이 조의 다음 조항들에 의하여 개정될 것이다.

② 제1조제2항 (화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갖고있어야하는 건조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마지막에는 제6호가 추가된다.

6. “작업장으로서의 용도”

③ 제2조(제1조에서 제외된 건조물) 제1호내지제3호 (1963년 사무실, 상점 및 철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법률{1963 c. 41.}, 1961년 공장법{1961 c. 34 } 또는 광산 및 채석장에 관한 법률 {1954 c. 70 }) 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건조물은 제외) 까지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 건조물에 화재시 비상탈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는 의무”

④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 ①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건물이나 토지에는 화재시 그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한다.

② 이 조가 적용되는 건조물이란 ---

1. 1963년 사무실, 상점 및 기차선로 건조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무용, 상점용, 기차선용 건조물 등

2. 그 법령의 취지를 위해서 그러한 건조물로 인정될 수 있는 건조물 등으로서

(각각의 경우에)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③ 이 조의 취지를 위해서,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서, 어떤 대피수단이 합리적으로 요구되어야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지 그 장소에서 아무 때나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의 숫자 뿐만 아니라 또한 정상적으로 보아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다른 것들 중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장소의 입주자는 법 위반으로 유죄이며, 최고

400 파운드의 별금형에 처해진다. "

⑤ 제12조제1항 (특정한 장소에 관한 화재 경고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권한) 의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 조의 그 무엇도, 제조공정을 수행함과 관계있는 특별한 예방책을 준비하거나 준수함을 고려하여 조항을 만드는 권한을 국무부장관에게 수여하는 것은 아니다."가 추가된다.

⑥ 제17조 (화재진압담당 부처가 건물에 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해야하는 의무)

1. 제1항중, "그리고"라는 말은 가목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에서는 생략될 것이다. 그리고

나목의 마지막에는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만일 그 장소가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1974년 작업장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1장의 의미의 범위 안에서 강제력있는 정부당국의 책임영역 내에 있다면 그 정부당국의 조언을 들어야한다." ;

2. 제2항중 "또는 건물담당 관청"이라는 말은 "건물담당 관청이나 다른 관청"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야한다. ;

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작업중의 보건과 안전 등에 관한 법률(그 법령의 제1장에서의 '강제력있는 관청'의 의미는 그리고 그러한 관청의 '책임의 범위'의 의미) 제18조제7항의 규정이 그 장에 적용되듯이, 이 조의 취지를 위하여 적용될 것이다."

⑦ 제18조 (그 법률의 시행규칙)

1. 거기에서 '그것'을 "제1항 아래의 제2항에 종속되며, 그것은"으로 한다.

2. "조"를 "항"으로 한다.

3. "위반"이라는 표현 뒤에는 제2항을 신설한다.

"②화재진압 관청은, 이 법령에 입각하여 보건 및 안전관에 의해서 그들을 대표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업무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관청의 기능들에 대해 보건 및 안전 위원회와 함께 계획할 수 있다.

⑧ 제40조중에서는 (왕가 등에게 적용)

1. 제1항제1호 (왕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건조물에 적용되는 조항들) 에서 , "제6조" 다음에 " , 제9조의2(제4항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삽입될 것이다.

2. 제1항제2호 (왕족이 입주하여 있는 것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적용되는 조항들) 중

"제8조"이라는 말 뒤에 "제9조의2"라는 표현이 삽입된다.

3. 제10항중, "지역적인 병원들"을, "보건위원회"로 한다.
4. 제10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항의2 이 법령은, 교수병원(1973년 국립 보건 서비스 재조직 법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에서 임시적으로 기술된 조직체) {1973 c. 12.} 원장 이 사회가 입주한 영국의 건물에 대해, 그 건물이 왕족이 입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

- ⑨ 제43조제1항 (해석)에서 다음의 정의의 끝부분에 추가될 것이다.

"업무"란 1974년 근무 중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1장의 취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 ⑩ 부칙 8 (1961년 공장법이나(1961 c. 34.), 1963년 사무실(1963 c. 41.), 상점 및 철도 건조물에 대한 법률에 입각한 화재에 관한 증명서를 고려한 과도기적 조항들) 은 효력을 갖는다.

제79조(대표자 보고서에 관한 회사법의 개정안) ① 1967년 회사법{1967 c. 81}은 이 조의 다음의 조항들에 의해서 개정된다.

- ② 제16조제1항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무부장관에 의해서 마련된 규정에서 명시된 부류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들의 종업원들의 근무 중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해에 강제되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업무중에 하게 되는 일의 과정에서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 ③ 제16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정들은

1. 상이한 유형의 회사와 관련한 상이한 조항들을 만들 것이다.
2. 그 규정들의 요구조건들이 특별한 경우에, 특정관청에 의해서 대표로 공인된 특정인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수정되도록 할 수 있다.

3. 그 규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과 관련하여, 국무부장관이 필요하거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임시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⑥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의회 양원 중 한 쪽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법률문서에 의해서 행사된다.

⑦ 제1항제7호 및 1974년 작업중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의 제1장에서 사용된 표현은, 동법률 제1조제3항은 그것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의미를 그 항목에서 갖는다. 그리고 그 동법률 제1조제3항은 그것이 그 법령의 그 장을 해석하는 데 적용되는 것처럼, 그 구절을 해석하는데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위의 제5항중, ‘특정한’이란 그 항목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규정에서 특별히 거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80조 (법령과 법문서들을 폐지, 개정하는 권한) ① 이 항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규정들은, 만일 규정을 만드는 관청에서 판단하였을 때 제1장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그 조항의 폐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항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규정들은 이 항이 적용되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부분 조항에 적용되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이 통과되기 전이나 또는 그와 같은 회기에 통과된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
2. 각 규정, 명령이나, 이 법령을 통과시키기 전에 어떤 법령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입법적 성격의 법령문서 등에서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
3. 관련 법령 조항들 중 하나에 적용하고, 제외시키며, 또 다른 취지로는 언급되는 조항들. 그리고 각 규정, 명령문, 또는 어떤 법에 입각하여 만들어지지만 위의 (B)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적 성격의 법률문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에 입각하여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정사항들은, 이 조에 적용되는 조항(그러한 시행을 취지로 하여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과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의 권한사항)의 시행과 관련된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만드는 권한은 다음의 각호의 자에 의해 행사된다. 그러나 그 항에 입각해서 규정을 만들기 전에 국무부장관이나 관련 농업관련 관청은, 국무부장관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 관청의 판단으로 보아 적합해 보이

는 단체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한다.

1. 단지 농업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닌 조항에 관해서는, 국무부장관
2. 오직 적절한 농업적인 취지와 관련되는 조항들에 관해서는 해당 농업관련 관청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조항들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들은 대영제국에 적용되며 농수산식량부 장관과 국무부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거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되며 첫 번째 말한 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거나, 스코틀랜드에만 적용되며 국무부장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리고 제4항제2호중 "적합한 농업관계 관청"은 그에 따라 해석될 것이다.

⑥ 이 조에서 "적절한 법령적 조항" "적합한 농업적 취지" "농업 운영" 등의 단어는 제1장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제81조(비용과 영수증) 다음은 의회가 지불한다. 그리고 이 법령에 의해서 장관이나 정부부처에 의해서 수령된 금액은 통합기금으로 지불된다

1. 이 법령의 취지를 위해서 장관이나 정부부처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 입각한 지불 총액이 이 법령의 조항에 기인해 증가되었을 때 그 증가분

제82조(해석과 규정에 관한 일반 규정) ① 이 법령에서는

1. "법령"은 어떤 법에 의해서 승인된 임시 명령을 포함한다.
2. "위반"이란 준수하지 못함을 포함하며, "위반"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 "수정"이란 추가, 생략 및 개정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관련 표현들은 그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4. 달리 확인되지 않는 장, 조 및 부칙에의 언급은 이 법에서의 장, 조, 부칙 등에 의 언급을 말한다.

②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법령에서 시행령에의 언급은 수정된 것으로서의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다른 시행령에 의해서 또는 그에 입각해서 적용된 것으로의 시행령을 포함한다.

③ 규정을 만드는 제1장이나 제2장 또는 이 장에 의해서 수여된 권한은

1. 규정에 의해서 상이한 상황과 경우에 대해서 상이한 조항을 만드는 권한, 그리

고 규정을 만드는 정부부처에서 그 규정들과 관련하여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상적이고 보완적이며 일시적인 조항들을 그 규정안에서 포함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2. 법령문서에 의해서 행사되며, 이는 국회 양원 중 한쪽의 결의에 의해서 폐지될 수 있다.

제83조(최소 및 필연적인 개정과 폐지) ① 부칙 9에서 언급된 시행은, 그 부칙에서 명기된 수정에 따르는 효력을 가질 것이다. (이 법령에서 필수적인 수정이나 최소의 수정으로서)

② 부칙 10에서 언급된 시행은 그 부칙의 세 번째 항목에서 명기된 정도로 폐지될 수 있다.

제84조 ① 이 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북 아일랜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제15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들이 부칙 3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취지에 맞춰 만들어지고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한, 제1장과 이 장
2. 부칙 9의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② 제3장은 스코틀랜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75조와 부칙 7은 제외)

③ 여왕은 의회명령에 의해서 제1장, 제2장, 이 장은, 그 명령에 명기된 데로의 취지대로 그리고 그 정도로, 대영제국 밖에서, 그 조항들이 대영제국 전체나 일부분에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서, 사람, 건물, 작업, 기사, 실체 및 다른 (어떤 종류이든) 문제들에 적용된다(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명령은

1. 상이한 상황이나 경우에 따른 조항을 만들 수 있다.
2. 그런 명령이 적용되는 바처럼, 그 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이, 영국시민의 여부를 떠나서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그리고 영국의 어떤 지역의 법률에 입각하여 법인을 이루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인체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이것이 영국의 외부의 법인체나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과 관계없이)
3. 대영제국 외부에서 발생된 제1장에 입각한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또는 대영제국의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송이나 不作爲와 관련된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송의 원인을 고려하여, 명령에 명기된 법원이나 어떤 부류의 법원에

사법권을 이임하는 조항을 만들 수 있다. 또 그 명령에 명기된 대영제국 지역에서 효력이 있는 법률에 따라서 그런 소송이나 부작위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조항들을 만들 수 있다.

4. 대영제국의 외부에서 발생한 제2장의 어떤 조항에 입각한 절차들을 1978년 영 토별 수력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의 3조의 실행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5. 이 조에 입각한 바로 뒤의 의회의 명령1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명령에 의해서 대영제국의 외부에서 발생한 제1장에 입각한 위반사항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38조는, “심사관에 의해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처럼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⑥ 이 조에 입각하여 법원에 이임되는 사법권은, 어떤 사법권도 침해하지 않고, 그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의해서, 이 조와는 별도로, 행사될 것이다.

제85조 ① 이 법령은 1974년 근무 중 보건과 안전 등에 관한 법률로 인용될 것이다.

② 이 법령은 국무부장관이, 법령문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령에 근거하여 지정한 날짜에 시행되기 시작한다. 또 상이한 취지를 위하여 이 항에 입각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이 조에 입각한 명령은, 이 법령의 부분적인 작용의 결과에서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보이는 이 법령의 조항들이나 그 조항들의 변형을 포함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법률의 조항들의 관계에서 필요하거나 마땅하다고 국무부장관이 판단하는 임시적인 조항들과 유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지정된 날짜의 전후에)

부 칙

부칙 1 적합한 법령적 조항들인 현존하는 시행규칙 1조 와 53조

부칙 1 적합한 법령적 조항들인 현존하는 시행규칙 소제목과 관련있는 법령조항

1875 c. 17. 1987년 화약법 30~32조, 80조, 116~

121조를 제외한 전체

1882 c.22. 1882년 보일러 폭발에 전체

관한 법

1890 c. 35.	1890년 보일러 폭발에 관한 법	전체
1906 c. 14.	1906년 알칼리 작업 규정법	전체
1909 c. 43.	세수법	11조
1919 c. 23.	탄저예방법	전체
1920 c. 65.	여성, 미성년자, 및 어린이 고용법	전체
1922 c. 35.	셀룰로이드, 영상필름에 관한법	전체
1923 c. 17.	화약법	전체
1926 c. 43.	공중보건법(흡연금지)	전체
1928 c. 32.	석유(통합)법	전체
1936 c. 22.	근무시간에 관한 법(관례)	6조를 제외한 전체
1936. c. 27.	석유(라이센스 이전)법	전체
1937 c. 45.	수소청산가리(훈증)에 관한 법	전체
1945 c. 19.	연료·전력부 법	1조(1) 그것이 대영제국 산이나
내의 광		채석장에 고용된 사람들의 안전, 보건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계 가 있는 한
1946 c. 59.	석탄산업 국영화법	42조(1)와 (2)
1948 c. 37.	방사선 물질에 관한법	5조(1)(A)
1951 c. 21.	알칼리 와 &c 작업규정법(스코틀랜드)	전체
1951 c. 58.	불꽃놀이에 관한 법	4 및 7 조
1952 c. 60.	농업법 (해독성 물질)	전체
1953 c. 47	긴급법(기타조항들)	3조
1954 c. 70	광산 및 채석장에 관합법	151조를 제외한 전부
1956 c. 49	농업법 (안전, 보건 및 복지조항)	전체
1961 c. 34	공장법	135조를 제외한 전체
1961 c. 64	공중보건법	73조
1962 c. 58	파이프라인 법	20~26조, 33조, 34조, 42조 부칙 5
1963 c. 41.	사무실, 상점 및 철로시설에 관한 법률	전체
1965 c. 57.	핵시설에 관한 법	1조, 3~6조, 22조, 24 조, 부칙 5
1969 c. 10.	광산 및 채석장에 관한 법률(Tips)	1~10조
1971 c. 20.	광산 관리법	전체
1972 c. 28.	고용의료 고문 서비스법	1조, 6조 및 부칙1을 제외한 전체

부칙 2 위원회 및 시행령 제10조의 헌법등과 관련된 추가조항

직책보유권

제1조.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람이, 의원이나, 회장, 부회장의 직책으로서, 그를 그 사무실에 임명한 법률문서의 조건에 따라서 직책을 보유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제2조. 사람은 언제나, 그가 그 직책을 사임한다는 본인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를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의원, 회장, 부회장으로서의 직책으로부터, 사직할 수 있다.

제3조. ① 만일 한 사람이 회장이나 부회장이 되거나 그 공직을 사직한다면, 국무부장관은, 그가 의원으로서 공직을 무효화하도록 예정되어있는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를 직원으로 임명하는 문서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② 만일 회장이나 부회장이 더 이상 의원이 되지 않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장이나 부회장은 공직을 가질 수 없게된다.

제4조. ① 만일 국무부장관이 다음각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국무부장관은 그의 의원으로서의 그의 직책을 무효화함을 선포하고 국무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 고지를 해야한다. 그리고 그 공직은 무효화되는 것이다.

1. 의원이 위원회의 승인 없이 6개월 이상 연속 위원회 회의에 불참해온 사실
2. 의원이 파산하여 그의 채권자와의 일을 해결하였을 때
3. 의원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무능해졌을 때
4. 의원이 단원으로서의 능력이 없거나 부적합하여 기능수행을 포기하였을 때,

② 제1항을 스코틀랜드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2호중 의원이 파산하였을 때 그리고 의원이 그의 채권자와의 일을 해결하였을 때에 대한 언급은 각각, 그 의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재정되었을 때, 그리고 의원이 그의 채권자를 위해서 또는 채무변제계약서을 위해서 담보신탁증서를 설정하였을 때의 언급으로 각각 대체되어야 한다.

의원의 보수

제5조. 위원회는 각각의 의원에게 국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불한다.

제6조. 위원회는 국무부장관이 정하는 연금, 퇴직수당, 그리고 보수의 방법으로 의원에게 지불한다.

제7조. 의원이 그의 임기만료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을 때 그리고 국무부장관의 관점에서 보아 그를 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일 때, 그 위원회는 국무부장관이 정하는 액수만큼의 지불을 할 수 있다.

절차

제8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위원회 회의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바와 같다.

제9조. 위원회의 절차의 유효성은 의원간의 공석이나 의원임명의 부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직원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직이나 부하직원들의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무이다. 그리고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임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이 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공급된 임원이나 공무원을 언급하는 것이다.

제11조. 행정부는 그런 임원과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그 인원의 숫자나 임기 그리고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국무부장관의 동의로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는 공무부 장관이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정하는 각 회계연도에 기간에, 그 장관에게 이 항의 취지에 입각하여 그가 결정하는 만큼의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그가 책임지던 그 해 동안에, 그 회계연도의 근무로부터 발생된, 즉, 행정부에서 근무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지급된 연금, 수당, 급여에서 기인된 금액과, 그리고 그 연금, 수당 및 보수를 관리할 때 발생된 비용을 합한 액수이다.

제13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행정부나 위원회의 임원이나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위원회를 대신하여 업무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회계와 리포트

제14조. ①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와 관련된 적합한 장부 및 기록의 보관
 2. 재무부장관이 재무부의 승인에 따라 지시하는 형식에 따른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보고서의 준비
 3. 보고서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다음해의 11월 말 전에 그 보고서의 사본을 국무부장관과 회계감사관, 감사국장에의 제출
- ② 회계감사관과 감사국장은 그들이 접수한 보고서 각각을, 이 부칙에 따라서, 조사하고, 증명하며, 보고해야하며 각 보고서의 사본과 또 그의 보고서의 사본을 의회 상하원에 제출해야한다.

제15조. 매 회계연도가 끝나자마자, 국무부장관에게 그 해 동안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이다. 그리고 국무부장관은, 이 항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보고서의 사본을 의회양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추가

제16조. 국무부장관은 공무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칙의 5항, 6항, 7항, 11항에 따라서 결의를 하거나 동의를 해서를 안된다.

제17조. 위원회의 公印의 확정은, 위원회의 서기 또는 그 취지에 따라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서명에 의해서 인증된다.

제18조. 위원회의 公印에 아래 정식으로 시행되는 의미를 가진 서류는 증거로 접수될 것이며, 그 반대의 상황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9조. 이 부칙의 앞의 조항들에서 "회계년도"란 매해 3월 31일에 끝나는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첫 회계연도는 국무부장관이 지시하는 데로 지시서에 명기된바와 같이, 12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으며(그러나 2년 이상 불가) "의장", "부의장", "의원"은 그 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의원을 각각 의미한다.

제20조. ① 이 부칙의 앞서의 조항들은 (제10조내지제12조 및 제15조 제외)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효력을 가질 것이다.

1. 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행정부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될 것이다.
2. 제2조내지제4조 및 제19조중 국무부장관에 대한 언급과 제7조중에서의 첫 번째 그러한 언급은 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될 것이다

3. §5조내지제7조중 국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국무부장관의 동의로 위임받은 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될 것이다.

4. 의장에 대한 언급은 이사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되고 부의장에 대한 언급은 생략된다.

5. 제14조제1항제3호중 "국무대신"에서 "다음"까지는 "그 마지막 이후에 이사가 지시하는 날짜까지 위원회는"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것이다.

② 앞서 말한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앞서의 호에 의해서 적용되었듯이 행정부에 의해서 그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이 부칙 제1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하거나 그와 함께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가 된다.

③ 한 사람을 행정부의 소속원으로 임명하는 문서의 조건은 국무부장관과 공무부에 승인으로 결정되는 바와 같다.

부칙 3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에 관한 문제 {15조.}

제1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 한다.

1. 제조, 공급 및 공장의 사용

2. 어떤 물질의 제조, 공급, 보관 및 사용

3. 어떤 과정을 수행하거나 어떤 작용시키는 것

② 어떤 공장에 대한 디자인, 건축, 보호, 장소선택, 설치, 용역, 조사, 수리, 유지, 변경, 조절, 해체, 시험 및 조사

③ 어떤 공장의 표시나, 공장에서 부품으로 사용되도록 디자인되었거나 기 사용중인 물품의 표시를 고려하여, 그리고 명기된 표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

④ 어떤 물질의 테스팅, 라벨링, 실험을 고려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

⑤ 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한 요구조건을 부과 하는 것.

제2조. ① 절대적으로 그 규정에 입각하여 부과된 조건들이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또는 그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설명이 있는 물품이나 물질의 U.K.로의 수입이나 선적 및 하선을 금지하는 것.

② 그런 수입, 선적 및 하선과 관련하여 행위나 부작위는, 앞의 호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법과 1952년 관세와 물품세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입각하여 볼 때 법률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법률을 명기한다.

제3조. ①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물품이나 물질의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

는 것.

② 그 특별규정이 있는 물품이나 물질의 수송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 콘테이너의 건조, 테스팅 및 마킹 및 그 물품이나 물질의 수송, 페키징과 라벨링의 방법을 고려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

제4조. ①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계약의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명기된 관청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특별히 명기된 종류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② 계약의 허가, 갱신, 변형, 이전, 취소(그 계약에 첨부된 조건의 변형과 취소도 포함하여)에 대한 조건을 규정할 것.

제5조. 어떤 개인, 건조물이나 물건이 어떤 특별한 상황하에서의 또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수행하는 조건으로서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

제6조. ① 어떤 특별상황에서, 사람(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두 가지를 겸비한 삶들)을 임명(특별한 자격이건 아니건 간에)하여 특별한 기능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임명된(규정을 따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에게 명기된 기능을 수행하는 의무와 권한을 이임하는 것.

②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능의 수행을 제한하는 것.

제7조. 어떤 특별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의 고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조. ① 보건진단 및 보건 검사 등을 포함하여, 근무중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

②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의 공기나 환경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

제9조. 특별히 구조적인 상황이나 건물의 견고성, 건조물의 입출입 방법, 청결도, 기온, 조명, 환기, 인구밀집도, 소음, 진동, 아이온화 및 다른 방사선, 먼지와 열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부과할 것.

제10조. 특히 적당한 물의 공급, 보건 편리함, 세탁과 욕실 시설, 앰뷸런스와 응급처치 방법, 휴게실시설, 좌석 시설 및 휴양시설 등을 포함하여 작업장에서의 명기된 복지시설의 조항을 확보할 것.

제11조. 날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의류를 포함하여, 특별한 상황에서의, 보호복 및 보호시설의 구비 및 사용을 고려한 요구사항을 부과할 것.

제12조. 특별한 상황에서 화재의 위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

제13조. ① 어떤 특별한 가스, 연기, 먼지 그리고 다른 특별 물질이 공기 중으로 분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것.

② 소음, 진동 및 이온화 및 다른 방사선의 분출과 관련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것.

③ 앞서의 호에서 언급된 그런 분출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

제14조. 근무중인 사람들의 교육, 연수 및 감독을 고려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

제15조. ①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내용을 특정인에게 특정방법으로 명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② 특별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령의 조항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서면의 조처방법을 제출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심사관에게 줄 것.

제16조. 기록이나 다른 서류(기획안과 지도)를 보유하고 지키는 것을 고려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할 것.

제17조. 동물을 다루는 것을 고려하여 요구조건을 부과할 것

제18조.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명기된 조건의 건조물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목적들은, 말하자면

1. 건조물이나 그 안의 사람들이, 근처지역에 존재하는 상황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2. 특별상황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조물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19조.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그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수색에서 발견되는 종류의 물품의 획득과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

제20조. 어떤 사건이나 다른 특정한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는 곳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 금지 또는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다음의 사항들은 만드는 것이 요청된다.

1. 보건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고하여 규칙을 만들거나 지시사항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고용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2. 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주나 다른 사람에게 규칙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
3. 고용주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문제와 관련한 규칙을 만들거나 이 항에 의해서 이전에 만들어진 규칙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
4. 특별한 상황에서 명기된 조건에 따라서, 규칙의 사이이나 이 항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부류의 규칙으로 해석되는 서류를, 더 이상의 증거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어떤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조례를 만드는 권한을 지방정부나 관청에게 부여하는 것. 그 권한의 행사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관청을 명기할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해석

제23조. ① 이 부칙에서 “명기된/특별한”의 의미는 보건 및 안전 규정에 명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거기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목적을 가진 이 부칙에서의 언급은 더 일반적인 목적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에 명시해야 한다.

부칙 4 농업과 관련있는 제1장에서의 개정 제32조.)

적용 조항 개정

제1조. 제13조제1항(다양한 권한)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적절한 농업적 취지에만 관련있는 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법령조항에 입각하여, 위원회 및 국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농업부 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그래서 그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농업부 장관의 기능에 대

한 언급으로 해석 된다.

제2조. 제14조

(조사와 문의를 지시하는 권한)

1. 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농업부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2. 제1항중, 제1장의 일반목적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농업적 목적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것이다.
3. 제2항중, "(direct)"에서 "other"까지는 "authorize any"로 대체될 것이며 "with the consent of the Secretary of State"는 빠질 것이며, "only matters"라는 말 부분 그 조의 끝까지는 "적절한 농업적 목적에만 적용되는 문제들"라는 말로 대체될 것이다.
4. 제6항중, 국무부장관에의 언급은 적절한 농업부장관에의 언급으로 해석될 것이다.

제3조. 제16조(소송절차법의 승인)

1. 제1항중,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언급은 농업적인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것이며, "그리고 제외"부터 "농업"까지는 삭제될 것이다. 그러나 그 조에서는, 오직 관련있는 농업적 취지와의 관련사안들에 그 조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제16조 제1항에서 언급된 어떤 조항에 관한 소송절차법을 승인하거나 발행하는 권한을 줄 것이다.
2. 소송절차법은 농수산식량부장관과 국무부장관이 함께 대영제국을 위해서 승인할 수도 있고, 농수산식량부장관에 의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위해서만 승인할 수도 있으며, 또 따라서 국무부장관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스코틀랜드만을 위한 것이고, 의회에 대한 언급은 농업부장관이나 농수산식량부장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것이다.
3.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법을 승인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장관(들)은 위원회나 그(들)의 판단으로 보아 적절해 보이는 단체의 조언을 받아야한다. ";
4.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 조에 입각하여 소송절차법을 승인해 온 당국은 언제나 그 법률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 하기전에, 그 당국이 그 법률의 승인을 계획할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언을 받도록 요구한 동일 단체로부터 조언을 받아야한다.

제4조. 제17조제3항

(승인된 법률을 형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

그 위원회에의 언급은 농업부장관이나 그들 중 하나의 장관에의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5조. 제27조

(정보의 획득)

1. 그 위원회나 행정부에 대한 언급은 적합한 농업부 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오직 관련 농업적 취지와 관련된 사안들과의 관련법령에 입각한 그 장관의 기능으로 해석될 것이다.
2. 시행당국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오직 농업적 취지와 관련있는 사안들의 관련법령에 입각한 시행 당국의 기능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3. 제1항중에서 "국무부장관의 동의에 의해서"는 삭제된다.
4. 제2항제호중에서 국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농업부 장관에의 언급으로 해석되며, "정보의 접수자"이라는 말은 삭제된다.

부칙 5 주제 - 건축 법규의 문제 제61조.

1. 장소의 준비

2. 적합성, 지속성, 재료 및 자재의 용도 (표면 마무리를 포함하여)

3. 다음을 포함하는, 구조적 강도와 견고성

- (1) 과적, 충격이나 폭발에 대비한 예비책
- (2) 인근 건물을 보호하는 조치와 서비스
- (3) 건물의 기둥 세우기

4. 다음을 포함한 화재 예비책

(1) 화재의 돌발, 화염의 확산 등에 저항하기 위한, 그리고 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2) 화재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화재진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 및 설비

(3)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피방법, 그리고 그 대피책을 확보하여 모든 중요한 시간에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방수 및 부패방지

6. 열의 전달에 영향을 주는 조치

7. 소리의 전달에 영향을 주는 조치

8. 침입을 예방하는 조치

9. 연기, 가스, 화염, 모래, 먼지 및 다른 유독물질의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0. 하수구 (쓰레기 처리 방법을 포함)
11. 더러운 물질을 모으고, 처리 및 취급하기 위한 오물통이나 다른 시설
12. 쓰레기를 보관, 처리 및 제거
13. 고체연료, 오일, 가스, 전기 및 기타 연료 및 전력(기구, 저장 탱크, 열교환기, 덕트, 팬 및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 설비
14. 수도 서비스 (물 공급을 위한 물 저장소 및 시추공을 포함하여) 와 시설 및 그와 관련된 고정 시설장비
15. 통신서비스 (전화 라디오, 텔리비전 연결 장치 설치)
1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호이스트(들어올리는 장치), 콘베이어 및 이동 보도
17. 압력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
18. 난방, 인공 조명, 기계적인 환기 및 에어컨의 표준 및 전력 설비
19. 건물 근처의 옥외 공간 및 자연조명 및 건물의 환기
20. 건물 안에, 또는 건물과 관련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숙박시설. 건물 내부에 방과 다른 공간의 치수
21. 건물의 입출입 방법 및 건물의 부분들
22. 건물 및 건물 주위에 있는 사람들(행인 포함)을 위험과 장애물로부터의 보호
23. 이 부칙의 앞서의 조항들에서 언급된 문제와 관계가 있거나 그 문제에 보조적인 사항들

부칙 6 건축 법규와 관련된 시행규칙의 개정 61조

제1장 개정

대중보건법(1936)의 개정 1936 c. 49.

제1조. 1936년 법령(계획안을 통과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관련) 의 제64조중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정부에 제출된 작업 계획안이 이 조의 앞서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거부되었을 때, 그 계획안을 제출한 사람이나, 또는 그것이 대리로 제출되었을 때는 그 안의 대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국무부장관에게 그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 그리고 만일, 어떤 관점에서 보아 그 규정에 의거,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승인이나 충족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그 사람이나 단체가 승인을 보류했거나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거부권 초래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이 항에 입각한 상소는 그 관점으로 보아 그 문제의 개인이나 단체가 그 상황에서 승인했었거나 충족할 수 있었는지의 기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

②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 1936년 법령의 제65조중에서 (건축규제를 지키지 않은 건축물의 제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

① 제1항중, “거기에서” 다음에는 “그리고 추가사항 및 그 추가사항을 그 관계에서 집행하는” 을 삽입한다.

2. 제2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2. 지방정부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권한을 가진 경우, 그들은 그에 덧붙이거나 그 대신에, 입주자, 건축자 또는 그 지방정부의 판단으로 그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외의 사람들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나 이상의 사람에게 그 고지한 내용을 알릴 수 있다.

3. 제3항중, “거기에서” 다음에는 “그리고 추가사항, 그리고 그 관계에서 추가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라는 표현이 삽입된다. 그리고 이 추가 내용 뒤에는 다음이 삽입된다.

“만일 제2항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지내용이 2인 이상에게 전달될 경우에는, 그 때는 --”

4. 제4항중, “또는 제2항 “을 ”제2항 또는 제2항의 2”로 하며 그 끝에는 다음이 추가된다.

“그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세부사항들이 그 계획안에서 나타나도록 요구되지 않는 어떤 것에 관하여도, 이 항은 그 고지내용이 (문제의 작업의 완료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제3조. 1936년 법령의 제90조 (그 법령의 해석) --

1. 제2항중, “그리고, 하는 한”에서 “이 규정들”까지는 “작업중 보건과 안전 등에 관한 법률(1974)의 제7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61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제외하고”로 대체된다.

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령의 이 장에서, 그 상황이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

1. 건축규제에 따른 계획안의 제출에 대한 언급은 이 법령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들을 따르는 계획안의 제출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것이다. ; 그리고 (B) “계획안”이란 다른 설명의 그림, 어떤 형태로의 자료 및 내역 등을 포함하며,

그 계획안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서 해석될 것이다.”

공중보건법 (1961)의 개정 1961 c. 64.)

제4조. 1961년 법령의 제4조중(건축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

1.제2항 마지막 부분 “다른 지역에 대한 다른 조항에 대한 권리”에 “그리고 일 반적으로 다른 환경이나 경우에 대한 다른 조항”을 추가한다.

2.제6항중 (건축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벌금) “건축규제”뒤에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규정에서 지시된 조항이 아닌”이 삽입된다. 그리고 ““100파운드”와 “10파운드”를 각각 “400파운드”와 “50파운드”로 한다.

제5조. 1961년 법령의 제6조중 (건축규제상 요구사항들을 취소하거나 완화하는 권한)

1.제1항중 마지막에 “무조건적으로 또는 지시사항에 명기된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그 면제 및 완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는 조건으로서”를 삽입한다.;

2.제2항중 내용에서, “shall”부터 계속되는 구절은 “어떤 설명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로 대체된다.

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해당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건물이나 계획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그 지방정부에 의한 신청은,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지방정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부장관에게 제출된다.”

4.제7항의 2 및 제7항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의 2. 만일, 이 조에 입각하여 국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기 위해 장관에게 신청이 제출되었고, 국무부장관은 그를 그 신청과 관계되는 건축규제 중 어떤 요구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또는 그 신청이 (계획중인)작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하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는 그가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지시사항을 결정하고 전달해야한다.

제7항의 3. 이 조에 입각하여 주어진 지시사항에서 명기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

반될 어떤 조건이라도 허락한 사람은 최고 400파운드의 벌금, 그리고 그의 위반사항으로 그가 유죄로 판명된 후의 기간동안 하루에 최고 5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제8항을 삭제한다.

제6조. 1961년 법령의 제7조중 (건축 법규의 면제, 완화를 하는 것을 거절한 지방정부의 결정에 대한 상소) --

1. 제1항중, 두 번째 “relax” 뒤에 “이러한 조건에 따르는 신청을 보장한다”를 삽입한다. 그리고 “서면통고에 의해서”를 “지정된 방식으로”로 하고, “한달”을 “지정된”으로 하며 “거절”을 “신청건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2. 제2항중, “기간”에서부터 “그리고 지방 기구”까지를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3. 제3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4.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 법령 제6조, 제7항의 2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사항에 관한 신청이 그에게 제출된 것과 관련하여 적용된 것처럼, 이 조에 입각한 국무부장관에의 상소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7조. 1961년 법령 제8조(건축규제 완화의 제안의 광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규제완화 제안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

제8조. ① 국무부장관이나 지방정부가 이 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전에, 그 지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단계를 취한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주기 전에, 국무부장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청은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의사표현을 고려해보아야한다.

② 건축 법규는

1. 앞서의 항에 입각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허용된 시간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2. 그 자신의 신청이 고려되는 신청자에게, 그 신청과 관련되어 규정상 출판하도록 요구되는 고지사항을 출판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정해진 경우에 앞서의 항의 요구 사항을 제외시킬 수 있다.”

제9조. 1961년 법 제 9(3)조 (건축 법규를 만들기 전에 건축규제심의 위원회 나

다른 단체와 협의할 것)

마지막에 “(그들의 기능과 관련되는 규정에 관하여는, 특히 국립 수자원 위원회를 포함하여)”를 삽입한다.

제2장 대중보건법 (1936) 1936 c. 49.} 제65조 및
대중보건법 (1961) 1961 c. 64.} 제4조, 제6조 및 제7조 개정

대중보건법 (1936)

제65조. ①만일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업무가 다음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당국은, 그 위반에 따르는 벌금에 대한 소송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소유주에게 그 일을 제거하거나 취소하라고 고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그가 선택한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일로서, 그에 관련되는 추가적인 일을 하거나 변경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만일, 지방관청이 — 앞의 조항이 아닌, 이 법령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공인되는 경우에,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어떤 작업이 그 계획안을 제출되지 않고, 또는 그 계획안이 거부되었는데도, 정부가 그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 작업을 수행된다면, 그 정부는 (그 소유주에게 고지하여) 그가 그 건물을 파기하거나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그가 선택하면, 그 고지상에 명기된 요구사항들(그 계획안을 통과하는 조건으로서 문제의 항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조건들)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제2항의 2. 지방정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 그들은 다음 사람들, 즉, 입주자, 건축업자, 또는 정부가 보았을 때 그 건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 이상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③이 조의 앞서의 조항들에 입각하여 고지를 받은 사람이 28일이나, 즉 결심판 법원이 그의 경우에 허용한 기간 이내에 그 고지된 내용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지방관청은 문제의 그 건물을 파기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판단에 꼭 필요한 추가적인 일을 집행하거나 변경을 실시한 후 그렇게 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에게 변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제2항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두사람이나 그 이상에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1.만일 그들에게 서로 다른 날짜에 그 고지가 접수되었다면, 앞서 말한 28일의 기간은 그들 모두에게 그 날짜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되며

2. 만일 그 고지가 즉결심판 법원이 그들 중 누구의 신청에 대해서 허용한 좀더 긴 기간이나 앞서 말한 기간의 만료일 내에 지켜지지 않으면, 앞서 말한 비용은 그들 중 누구에게든지 변제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2항의 2의 규정에 의한 어떤 고지사항도 문제의 건물의 완성되는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 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만일 그 계획안이 관청에 의해서 통과되었거나 그 거부의 고지가 제출한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내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작업이 그 계획안 및 그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서 그 지방관청이 부과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행되었다면, 건물이 건축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말했듯이 이 조의 어떤 항에 입각한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그 관청이 그러한 고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그 계획안에서 나타나도록 요구되지 않는 사항들 중 무언가를 위하여, 이 항의 그 어느 내용도 그런 고지를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문제의 건물이 완성되는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하기전에)

⑤ 이 조의 어느 것도 건물이 이 법률의 규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그 빌딩의 제거나 변경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방 관청이나 법무부 장관,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건물이 그 계획안이 제출되고 그 지방관청에 의해서 통과되었거나, 그의 거부에 대한 고지가 그 제출 날짜 이후 지정된 기간내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작업이 그 계획안에 따라서 시행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을 내리는 법원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적당한 만큼의 보상을 그 건물의 소유주에게 지불하도록 그 지방관청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법원의 규칙에 따라서, 그 지방 관청이 소송의 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지방관청에게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할 수 있다.

공중보건법 {1961 c. 64.}

제4조. ①[삭제]

② 건축규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조항도 일반적으로 또는 그 규정에서 명기된 지역에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 규정은 상이한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조항을 그리고 상이한 상황이나 사건의 경우에는 상이한 조항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다.

③ 모든 지방관청은 그 관할 구역 내의 건축 법규를 시행하는 것을 그 관청의 기능으로 한다.

④ 지역 관청은, 건축규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건축 조례와 관례에서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공중보건법 (1936) 의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⑤건축법규는 국무부장관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조항들을 포함한다.

⑥만일 어떤 사람이,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관한 규정에서 지시된 사항이 아닌, 건축법규의 내용에 포함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그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는 최고 400 파운드의 벌금 그리고 그가 유죄로 판명된 이후 그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하루에 최고 50파운드로 계산되는 만큼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⑦건축규제를 만드는 권한은, 의회의 양원 중 한 쪽의 결의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법률문서에 의해서 행사된다.

제6조. ①국무부장관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해당 신청과 관련된 특별한 경우, 건축법규의 어떤 요구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지방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또는 지시사항에 명기된 조건(그 규정의 면제 및 완화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부로, 그 요구사항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②건축법규가 그 법규에서 포함된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건축법규제를 규정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권한은 지방관청(지방관청과 협의 한 후에 국무부장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에 의해서 행사된다. :

이 항에 의해서 마련된 건축법규가 어떤 식의 적용도 제외시킨다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포함된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건축법규를 규정한다.

④이 조에 입각한 신청은 그러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하며, 정해진 사항들을 포함해야한다.

⑤그 신청은 지방관청에 제출되며,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지방관청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지방관청은 즉시, 그 신청을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 신청자에게는 그 서류가 그렇게 이관되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관할 지역내의 건물이나 계획된 건물과 관련되어 지방관청이 하게되는 신청은,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지방관청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한다.

⑦제1장의 규정은 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수행되어 온 작업에 건축법규를 적용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지시사항에 관하여, 이 조에 입각하여 제출된 신청에 관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7항의 2. 이 조에 입각한 지시사항에 관하여 국무부장관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 국무부장관이 그 신청이 관련된 건축법규의 요구가 적용되지 않거나, 그 신청과 관련되는 건물이나 계획된 작업의 경우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가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항의 3. 이 조에 입각하여 주어진 지시사항에서 명기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될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하는 사람은 최고 400파운드 그리고 그가 유죄임이 확정된 후 그 위반사항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하루에 최고 50파운드에 이르는 별금형에 처해진다.

제7조. ①만일 지방관청이 그들이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법규의 완화나 완화 신청을 거절한다면, 그 신청자는 이 건에 대해서, 지방관청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규정된 기간내에, 정해진 방식대로 이 결정에 대해서 국무부장관에게 상소할 수 있다.

②만일 규정된 기간내에, 지방관청이 그 신청자에게 그 신청건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지방관청이 그 신청을 거절하고 앞서 말한 기간내에 그들의 결정을 신청자에게 알린 경우와, 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⑦제7조 제7항의2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에서 국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된 바와 같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부장관에게 상소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부칙 7 스코틀랜드 건축법 개정 (1959) .{ 75조. 1959 c. 24. }

제1조. 제3조에서 (건축표준 규정) --

1.제2항중, “보건 및 안전”이라는 말 뒤에는 “복리”라는 표현이 삽입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리고 연료와 전력의 보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이라는 표현이 삽입된다.

2.제3항중 다음사항이 추가된다.

“4.국무부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서류에 대한 언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구성될 것이다.” ;

3,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무부장관은, 만일 그 시행규칙이 건축표준규정에 포함된 조항들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필요할 때, 또는 그 조항들의 결과로서 변경이 요청될 때, 법령적 서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령에 의해서, 이 항이 적용되는 시행규칙을 철회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이 조는, 스코틀랜드 건축법 (1959)에 포함된 시행령을 제외하고는, 작업 중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1974)과 같은 회기에 또는 그 이전에 통과된 법령에 포함된 시행령에 적용된다.”

제2조. 제4조 (건축표준규정의 완화)에서

1.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은

1. 만일 그렇게 규정한다면, 지시사항에 명기된 기간의 만료일에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2. 국무부장관에 의한 후속 지시사항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

제5항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이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되거나,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폐지된다면, 전체나 부분이 그 지시사항과 관련이 있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건축문제와 관련된 보증서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전에 건축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은 그 지시사항(그 안에 명시된 조건과 함께)의 지속적인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제6항 및 제7항중, “제1항 제2호”라는 말 뒤에는 “또는 제5항 제2호”라는 표현이 삽입된다.

3. 제7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규정된 요금을 국무부장관에게 지불해야한다; 그리고 이 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들은 각 경우에 따라 상이한 요금을 명시한다.”

만일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 항에 의해서 지불해야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한다면 .”

제3조. 제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물의 유형 등을 승인하는 국무부장관의 권한 .

제4조의3. ①이 조의 다음 조항들은, 국무부장관이 그에게 제출된 신청에 관해서 또는 그 자신이 자발적으로,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건축표준규정의 특별조항을 준수하는 건물의 유형을 승인하도록 하는 권한을 국무부장관에게 주는 취지로 효력을 갖는다.

②건물의 유형에 대한 이 조에 입각한 승인신청은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표준규칙의 특별조항을 준수하는 건물의 유형을 승인하는 경우에, 그런 취지로 그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기하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1.그 증명서와 관련된 건물의 유형

2.그 증명서가 관련된 건축표준규정의 조항들

3.그 증명서가 적용되는 경우의 종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④이 조에 입각한 증명서는, 그 증명서에 명기된 데로 그 기간의 만료일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⑤만일, 이 조에 입각한 증명서가 유효한 기간동안, 그 증명서가 적용되는 유형의 건물과 관련한 특별한 경우에, 그 해당건물이 바로 그 유형이며, 그 것이 그 증명서와 관련있는 경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은 그 경우에 그 증명서가 관련되는 건축 표준 규정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⑥국무부장관은 때때로 이 조에 입각하여, 그에게 제출된 신청의 경우에나 자발적으로, 증명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해서 발생된 증명서의 경우에는, 그가 그 사람이 신청하자마자 그것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변경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가 그리하리라는 계획에 대한 합당한 고지를 해주어야한다.

⑦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규정된 요금을 국무부장관에게 지불해야한다. ; 그리고 이 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정은 각 경우에 따라서 상이한 요금을 규정한다. ;

국무부장관이 특별한 경우에 이 항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요금의 전부나 일부를 산감해주는 경우에는,

⑧국무부장관은 언제라도 이 조에 입각하여 발생된 증명서를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전에,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그가 그리하겠다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고지해주어야한다.

⑨국무부장관이 이 조에 입각하여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그렇게 발행된 증명서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그는 그가 판단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공고해야한다.

⑩만일 이 조에 입각한 증명서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 조의 앞의 조항들에 입각하여 변경되거나 폐지된다면, 그 전에 그 증명서와 관련되는 건물의 유형의 건축과 관련되는 보증서의 신청이 건축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은, 그 증명서에 의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적인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⑪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변경에 대하여, 국무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당사항별로 분리하여 구분해야한다.”

제4조. 제6조(건축표준규정, 건축시행규정을 건물의 건축이나 폐기, 또는 용도변경 등에 적용.)에서

1.제3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의 2. 건축당국이 건물의 건축을 위한 보증서의 신청서와 함께 그들에게 제출된 자료가,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 건축표준규정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규정된 건축상의 단계에 비추어보았을 때 충분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단계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자세한 정보가 제출되고 그 작업이 진행되도록 승인하는 보증서의 조건에 수정을 한 연후에야 그 규정된 단계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한다면, 그들은 그 건물에 대한 건축보증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이 그들에게 제출된 자료상의 규정된 단계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건축되었을 때 그 단계가 건축표준규정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때만이, 그들은 정해진 방식대로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수정을 하게 될 것이다. ” ;

2.제10항중, “이러한”이라는 말 뒤에는 “ 제3항의 2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단계 및 “라는 말이 첨가 될 것이다.

제5조. 제92조 (완료증명서)에서

1.제2항중, “그러나 그들이 ~에 납득할만할 때”를 ”, 그 일에 관하여 모든 합당한 단계를 밟은 후에 보장할 수 있는 한, ”으로 한다.

2.제3항중 “앞의 마지막 항에서 언급된 바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을 “완료 증명서를 허가한다 ”으로 한다. ;

3.제3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의2. 지시된 대로, 전기설비가 아닌, 설비로 구성되는 건축의 부분들에 관하

여는, 건축당국은, 그 정해진 자격자에 의해서 그 설비가 관련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완료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건축당국이 판단으로, 어떤 합당한 이유로 그 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제4항중 “앞의 마지막 항”을 “제3항 또는 제3항의 2 ”로 한다.

제6조. 제11조 제1항 제2호중, “보건 및 안전 ”앞에 “복리”를 삽입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라는 말 뒤에는 “그리고 연료와 전력의 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를 삽입한다.

제7조. 제19장 (벌금)에서, “10 파운드”를 “100 파운드”로, “50파운드”를 “400파운드”로 한다.

제8조.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사상의 책임

제19조의 2.①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조항에 따라서 이 조가 적용되는 부분의 위반사항은, 그것이 피해를 야기시키는 한, 다른 식으로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 그리고 이 항에 의해서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정해진 항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②이 조는 다음각호의 위반사항에 적용된다.

1. 건물의 건축, 파기, 용도변경 등의 보증서 상의 조건이나,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이 법령에 입각한 명령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2. 건축 시행 규칙의 어떤 조항의 위반

3. 건축 표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식으로, 보증서 없이 건축된 건물

4. 보증서 없이 건물용도를 변경하였는데, 건물의 용도변경이후에 그 건물이 해당 건축표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그 용도변경을 이유로 그 규정들이 적용되는가 더 어려운 경우

③ 건물의 용도변경, 증축, 변경, 파기, 수리, 유지 및 설치와 관련하여 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항이 효력을 갖게된 날짜 이전에 건조된 건물과 관련되어 이 조가 적용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그에 의한 규정에서 정해진 항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이 조에서의 그 어느 내용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 조가 적용되는 위반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이 조의 조항들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⑤이 조에서 "손해"란 사람의 사망, 상해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의 질병과 불구를 포함하여)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제26조 (왕가의 권리)에서

1.제1항중 "왕 그리고"라는 표현 뒤에는 "이 조의 조항들을 따르는"이라는 표현이 추가된다. ;

2.제2항의 2내지 제2항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2. 건축 표준 규정은 , 그들이 다른 식으로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왕가의 건물이 아닌 건물에 적용되듯이, 왕가의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항의 3. 건축표준규정이 적용되는 왕가의 건물은 그 규정에 따라서 건축되어야 한다.

제2항의 4. 건물의 증축이나 변경에 관한 건축 표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왕가의 건물의 증축이나 변경은, 증축이나 변경된 건물이 그 증축이나 변경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1.만일 그 실시개시일 전에는 즉시 건축표준규정을 준수하였던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2.그 날짜전에 즉각적으로 건축표준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후로는 그 날짜전에 즉각 준수하지 못한 것보다 더 심한 정도로 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왕가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그 건물이, 그 용도변경을 이유로 그 건물에 적용되거나 더 상대적으로 심하게 적용될 건축표준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2항의 5. 제19조의 규정은 왕가건물이 아닌 것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가건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조가 적용되는 위반은 제26조 제2항의 3 또는 제2항의 4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나, 건축 시행규칙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의 6.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떤 경우에도 권리의 침해하지 않고, 국무부장관은 그가 왕가건물이 아닌 건물과 관련하여 제 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갖는 권한과 같이, 왕가의 건물과 관련한 건축표준규정의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그 유사 권한을 갖는다. ; 그리고 앞서 말한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2 및 제9항의 규정은 이 조의 취지에 적용될 것이다

1.제4항중,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당국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2.제5항의 2중, “신청”에서 끝까지는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그 지시사항과 관련 있는 종류의 건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시작되었다”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3.제9항중 “또는 제4조의 2 제3항”이 생략된 것처럼

제2항의 7. 앞서 말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침해하지 않고, 제4조의 3의 규정을 왕가 건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10항중, “신청서”란 말부터 끝까지가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그 지시사항과 관련 있는 종류의 건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시작되었다” (78조)로 대체될 것이다.

부칙 8 공장법 1961{1961 c. 34.}와 사무실, 상점 및 기차선로 건조물에 대한 법률 {1963 c. 41.})에 입각한 화재관련증명서와 관련된 임시조항들

제1조. 이 부칙에는 --

“1971년 법령”은 화재예방법(1971){1971 c.40.}을 “1971년 법령 증명서 ”란 1971년 법령의 의미내에서의 화재예방증명서를 의미한다.

“공장법 증명서 ”란 공장법 (1961)의 40조에 입각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에 관한 증명서로 화재진압당국에 의해 발행)

“사무실 법 증명서”란 사무실, 상점 및 선로 시설에 대한 법률(1963) 29조에 입각한 화재관련 증명서를 의미한다.

제2조. --①각 건조물에 관하여 공장법 증명서 또는 사무실법 증명서(현존하는 증명서)가 유효할 때 각 건조물에 관한, 1971년 법령의 1조에 입각한 명령에 의한 1971년 법령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에, 이 항목의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될 것이다.

②현존하는 증명서 (그 증명서를 발급해준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는 계속 유효할 것이며,

1.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발행된 대상의 건조물을 고려하여 발행된 1971

년 법령 증명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러한 건조물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용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1971년 법령에 따라서 (상세히) 수정, 대체, 폐지될 것이다.

3. 현존하는 증명서는, 제2항의 제2호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것처럼, 앞에서 말했듯이, 그 건조물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들에 의해서 부과되었던 요구사항들과 유사한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1. 만일 현존하는 증명서가 공장법 증명서라면, 공장법(1961)의 다음의 조항들은, 즉, 제41조 제1항, 제48조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제외),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그리고 그것이 그 건조물에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41조(3)항에 의해서.

2. 만일 현존하는 증명서가 사무실법 증명서일 경우는, 사무실, 상점 및 기차선로 건조물에 대한 법률(1963) 중 다음 조항들에 의해서 ;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리고 그것이 한 때라도 그 건조물에서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30조 제3항.

제3조. 1971년 법령의 1조에 입각한 명령에 의하여 그런 건조물에 관하여 1971년 법 증명서가 요구될 때, 진행중인 건조물에 관한 공장법 증명서 또는 사무실법 증명서의 신청은, 1971년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건조물에 관한 1971년 증명서 신청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그 절차도 적용될 것이다 : 그러나 (1971년 법령의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화재진압당국은, 그런 신청의 절차상의 조건으로서, 그 신청자에게 어떤 사항을 명기하도록 하거나, 그 법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 요구되어 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칙 9 사소하거나 중요한 개정 83조. }

검시관 개정법 (1926) The Coroners Amendment Act 1926 c. 59}

제1조. 검시관법(1926) (검사관이나 정부 공무원에게 그 보고해야만 하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 검시관에 의해서 배심원 앞에서 사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중 13조(2)항(C)에서, "정부부처의" 라는 말 뒤에는 "또는 작업중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1974) 중 19조에 입각하여 임명된 검사관"라는 표현이 삽입된다.

하원의원 자격 박탈 법 (1967) (The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s Act 1957 1957 c. 20.)

제2조. 하원의원 자격박탈법 부칙 1의 제1장 (그 법령에 입각하여 모든 의원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는 단체를 명기함)에서, 그것이 U.K.의 하원에게 적용되듯이, “보건 및 안전 위원회”의 표현이 알파벳 순서에 따른 적당한 장소에 추가된다.

의회산하위원회법 (1967) (The Parliamentary Commission Act 1967 1967 c. 13.))

제3조. 의회 위원회 법 (1967)의 부칙 2 (그 법령에 의거하여 조사할 수 있는 정부 부처들의 리스트) 에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른 적당한 장소에 “보건 및 안전 위원회” 그리고 “보건 및 안전 사무국”라는 단어가 삽입된다.

부칙 10 폐지 83조.)

부칙 10 폐지 83조.)

편	소제목	폐지의 범위
26 Geo. 5 & 1 Edw. 8.c. 49.	공중보건법(1936) The Public Health Act 64(4)와 (5)(1936)	53조 67조 중 “그리고 국무부장관의 결정”에서부터 끝까지 71조 343(1)조에서 “건축규정”에 관한 정의
7 & 8 Geo. 6. c. 31. n Act 1944	교육법 (1944) The Education	63(1)조
10 & 11 Geo. 6. c. 51.	도시 및 지역계획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	부칙 8 중서 공중보건법(1936) 53조
2 & 3 Eliz. 2. c. 32.	원자력관리청법 (1954)	5(5)조

The Au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4. & 5 Eliz. 2. c. 52. 대기환경보호법 (1956) 24조
The Clean Air Act 1954

9 & 10 Eliz. 2. c. 64 공중보건법 (1961) 8 4조에서, (1)항
The Public Health Act (4)항 중에서는 "그리고 건물"부터
그 항 끝 1961까지
6조의 (4)항에서 "건축규제에
의해서 지시되듯이"라는 표현과 "그래서"라는 표현
(8)항
7조의 (3) ~ (6)항까지
10조의 (1) ~ (2)항까지
부칙 1의 제3장에서
대중보건법의 53, 61, 62, 71
조의 수정 그리고 깨끗한 공기
법의 수정에서 24조의 수정 내용과 마지막 항목에서의 "24"

1965 c. 16. 공항관리공단법(1965) 19(3)조에서 "71조"부터
The Airport Authority "규정"까지, 그리고
Act 1965 and the proviso to the said
section 71"이라는 표현

1971 c. 40. 화재예방법(1971) 2조의 (A)에서 (C)까지
The Fire Precaution 11조
Act 1971 17(1)(i)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and" 43(1)조에서 "건축규제"의 정의

1971 c. 75. 민간항공법(1971) 부칙 5에서, 2(1)에서
The Civil Aviation "그리고 71조"에서 "규정"까지
Law 1971 그리고 "and the proviso to the said
section 71"이 6라는 표현

1972 c. 28. 고용 의료지원법 1조 및 6조 (1972) 부칙 1
The 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Act 1972

1972 c. 58	국립보건서비스 (스코틀랜드)법(1972) The National Health Service (Scotland) Act 1972	부칙 6에서 157항
1972 c. 70.	지방정부법(1972) The Local Government Act 1972	부칙 14에서 43항
1973 c. 32.	국립보건서비스 재편법(1973) The 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zation Act 1973	부칙 4에서 137항
1973 c. 50.	고용및직업훈련법(1973) Th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	부칙 3에서 14항
1973 c. 64.	Maplin 개발법(1973) The Maplin Development Act 1973	부칙 2의 2항(1)중에서 “그리고 71조”부터 “규정”까지